

발행인: 서울특별시
 편집인: 공보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111 ~ 3

서울시보

제 2191호 1999. 5. 25. (화)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 규 칙

제 3006 호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4
제 3007 호	서울특별시사무인계규칙중개정규칙	4
제 3008 호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칙	23
제 3009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34
제 3010 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55
제 3011 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55

● 고 시

제 1999-140 호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	58
제 1999-141 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59
제 1999-142 호	도시계획사업 (하천) 실시계획인가	61

● 공 고

제 1999-420 호	제2중전기공사업면허취소	80
제 1999-421 호	제2중전기공사업면허실효	80
제 1999-432 호	시의회부의안건	80
제 1999-435 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82
제 1999-442 호	기부금품모집허가	82

● 입법예고

제 1999-42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83
--------------	-------------------------	----

< 이면계속 >

공 람											



제 1999-433 호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 (안)	84
제 1999-438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 (안)	85
제 1999-439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 (안)	85
제 1999-441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개정 (안)	86
제 1999-444 호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	86
제 1999-445 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안)	87
● 교육청입법예고		
제 1999- 53 호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88
● 구 고 시		
제 1999- 57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및지적승인 (성북)	89
제 1999- 32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노원)	90
제 1999- 33 호	도시계획사업 (상계동107-1008~72-8간외2건도로) 실시계획인가 (노원)	91
제 1999- 3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추가 (구로)	97
제 1999- 35 호	도시계획사업 (고척동98-81~98-99간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구로)	97
제 1999- 21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악)	98
제 1999- 25 호	신림5동제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환지에정지지정) 변경 (관악)	99
제 1999- 25 호	도시계획사업 (염곡동100-11~155-2간도로) 실시계획의변경인가 (서초)	99
제 1999- 25 호	하천점용허가 (강남)	100
● 구 공 고		
제 1999-145 호	건설업등록 (용산)	101
제 1999-173 호	도시계획사업 (공공용지정비) 실시계획공람 (동대문)	101
제 1999-380 호	건축허가및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서류공람 (성북) ..	101
제 1999-209 호	도시계획사업 (월계동916-1~912-9간도로) 실시계획공람 (노원)	102
제 1999-154 호	건설업양도인가 (마포)	103
제 1999-129 호	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 (강서)	103
제 1999-191 호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영업정지처분 (서초)	103
제 1999-304, 314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강남)	107
제 1999-302, 305, 306, 308, 309, 310, 311, 313 호	전문건설업등록 (강남)	108
제 1999-197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송파)	110
제 1999-199, 203, 206 호	전문건설업등록 (송파)	110
제 1999-121 호	전문건설업등록취소 (강동)	111
제 1999-122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강동)	111
● 사업소공고		
제 1999- 2 호	소방시설공사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 (강동소방서)	112
제 1999- 7 호	소방시설공사사업면허 (송파소방서)	112
제 1999- 3 호	소방시설공사사업면허 (양천소방서)	112
제 1999- 17 호	소방시설공사사업면허 (서초소방서)	112
제 1999- 17 호	소방시설의공사사업면허 (강남소방서)	113

제 1999- 18 호	소방시설의공사업면허 (강남소방서)	113
제 1999- 7 호	소방시설의공사업등록 (중부소방서)	113
● 인 사 발 령	113
● 입 찰 공 고		
제 1999- 17 호	용역(행주대교남단접속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 입찰(건설안전관리본부) ..	114
제 1999- 54 호	공사(관내불량맨홀정비및인상) 입찰(강동구)	115
제 1999- 6 호	도시철도역사내편의시설임대모집 (도시철도공사)	116
제 1999- 10 호	입찰(도서구매) (강서교육청)	117
● 기 타		
제 1999-156 호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범가로설계현상공모(서대문)	118

규 칙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규칙제3006호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관계실장”을 “관계담당관”으로, 같은조제2항 본문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같은조제2항제1호중 “실”을 “담당관”으로,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로 한다.

별표1의 하단에 다음을 신설한다.

※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월정고문료를 지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개정('98. 12. 28)으로 종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변호사가 제외됨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수임료 및 입법·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조직제도 변경에 따른 과 명칭조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우리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에 부가가치세 포함(별표1)
- 나. 입법·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에 부가가치세 포함(부칙)

서울특별시사무인계인수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규칙제3007호

서울특별시사무인계인수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생략할 수 있다.”를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 각종 서식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담당관 또는 과장”을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를 “과 또는 담당관 단위로”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단서중 “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를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하며, 같은조제2항중 “사무주관 실·과”를 “사무

<p>주관 과·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과·계장”을 “관·과장·담당관”으로 한다.</p> <p>제8조제2항중 “과·계장”을 “관·과장·담당관·직원”으로 한다.</p> <p>제11조제2항중 “계장이하 직원”을 “직원”으로 한다.</p> <p>별표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p> <p>〈 별 표 〉</p> <p style="text-align: center;">사무인계인수사항</p>	<p>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항 목</p>	<p style="text-align: center;">항 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방침 (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정·현원조서 └ 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주요사업추진현황 6. 주요지시사항목록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등) 7. 주요 미결업무조서 (접수된 민원서류일체, 담당업무와 관련한 각종 행정동향)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소송 계류중인 사항 10. 관인·공인 목록 11. 보존문서 목록 12. 비밀소유 현황 13. 장부·대장 목록 14. 비품·장비·도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관사 비품(정원수, 장비 등 포함) └ 2 부서별 비품(사무용, 행정·건설·기타장비 등) └ 3 도서목록 15. 주요 소모품 현황 16. 차량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7. 재고물품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유류 수불조서 └ 2 약품 수급조서 └ 3 양곡 수불조서 └ 4 기타 자재수급조서 18. 비축물자 수급조서 19. 재산조서 20. 채권, 채무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채권조서 └ 2 채무조서 21. 세입세출예산현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세입예산현계표 └ 2 세출예산현계표 └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22. 세입세출외 현금수지현계표 23.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4. 적립금 조서 25.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6. 보조금 수지현계표 27.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28.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29. 직무편람 3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별지 제1호서식></p>	
<h2 style="margin: 0;">○○○ 사무인계인수서</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p>○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p> <p>○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p> <p>○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p>	
<p><별지 제2호서식></p>	
<h2 style="margin: 0;">시 정 방 칙</h2>	
<p>시 정 방 칙</p>	<p>세 부 시 행 방 칙</p>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p>	

<별지 제3호서식> <h3 style="margin: 0;">기구조직 현황</h3>										
구 분	본 청		본 부 (1급이상)	사업소	자 치 구		기 타			
	실 · 국 · 관	과 · 담당관			구	동				
부서수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h3 style="margin: 0;">정현원 조서</h3>										
구분	총원	일 반 직				별정	기능	고용	계약	기타
		소계	본청	사업소	자치구					
정원										
현원										
결원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1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사 업 소			자 치 구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에 한하여 작성함.												
소속과·담당관		직 명		성 명		분장 사무			담당일자			
* 과·담당관별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 직제 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주요사업 추진현황				
구 분	진 명	사업내용(개요)	추진현황	추진부서
※ 참 고 :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주요지시사항 목록				
지 시 사 항			추진상황	주관부서
지시구분 (지시자)	일 자	지시내용(요약)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주요미결업무조서												
사 업 명	사업(업무)내용	추진상황	미결사유	완료시기 (예정)	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구분	소관부서	사업명	공 약						추진상황		미결 사유	금후 처리 방안
			공약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지역 또는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사건명	사건개요	당 사 자		최초제소		진행상황	소관부서
		원 고	피 고	일 자	관할법원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관인 · 공인 목록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조또는 개각일자	주 용 도	관수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 12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부서별	합 계	영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p>*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p>								
<별지 제 13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기관별	등급별	비밀			대외비	음어자재	비고	
	계	I 급	II 급	III 급				
<p>* 내역은 별도 과·담당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p>								
<별지 제 14호서식> 장부·대장 목록								
과·담당관별	생산년도	장부·대장명	책 수	보관장소	비고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p>								

<별지 제 15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 (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2. 부서별 비품 (사무용, 행정·건설·기타장비 등) 목록

(단위 : 천원)

과·담당관	합 계			정수 (업무, 사업용) 물품			비 정 수 물 품		
	품목수	수량	금액	품목수	수량	금액	품목수	수량	금액

* 내역(종류별)은 별도 과·담당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3. 도서목록

소 관 별	총 수 량	비 고
계		

* 명세는 별도 과·담당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 16호서식>										
주요소모품 현황										
실과명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이월	수입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p>										
<별지 제 17호서식>										
차 량 현 황										
부서별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용자	비 고				
<p>* 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p>										

<별지 제 18호서식> <h2 style="margin: 0;">재 고 물 품 조 서</h2>								
1. 유류수불조서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단위: ℓ)</div>								
유종별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부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2. 약품수급조서								
과·담당관	품명	단위	대장상수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수입	불출	잔량			
3. 양곡수불조서								
품 명	단위	단량	포장재료	수 량			비고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4. 기타 자재 수급조서								
과·담당관	자재명	단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수입	불출	잔량		
<p>*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p>							
<별지 제20호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		토 지 (천㎡)		건 물 (천㎡)		기 타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합 계							
공유 재산	소 계						
	행정 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통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국유 재산	소 계						
	행정 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p>*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p> <p>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p>							

<별지 제21호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1. 채권조서

과·담당관	채권종류	채 권				채 무 자
		채권현재액	발 생 일	소멸일자	목적또는사유 (조건)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 (기채 등)

일자별	건 명	목적또는 용 도	기 채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 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부서
			금 액	이율 및 조 건	상환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1. 세입예산현계표

회 계 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 고

2.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	예산현액	수 입 액 (세입) ①	자금전용액 ②	지 출 액 ③	잔 액 ①+②-③	비 고

※ 잔고증명 별첨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	회 계 별	예산배정액	자금영달액	지 출 액	예산잔액	자금잔액	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div>								
<별지 제24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영 달		집 행		비 고
항	세항	목		금액	미수령액	금 액	잔 액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div>								

<별지 제25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종 별	금 액	기 간	이 율	통장번호	예 금 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 종 별	수 익		불 출		잔 고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단위 : 백만원)								
보조 부서별	건명 (내역)	예산액	영달액 (보조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지출과목 (회계별)	교 부 (지출)			정 산			미 정 산	
	일자 (기간)	금액	소관 부서	일자 (기간)	정산 금액	집행중인 금액	금 액	사 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건명(내용)		문 제 점		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h2 style="margin: 0;">직 무 편 략</h2>																					
업 무 명																					
업무개요		근거법규																			
<input type="checkbox"/> 업무처리절차																					
일련번호	업무내용 (항목)	처리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및 관련법규	관련부처 (협의·협조)	결 재 자 (전 결)																
<input type="checkbox"/> 처리흐름도																					
<input type="checkbox"/> 주요연혁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추진실적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업무인계·인수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일 자</td> <td style="width: 15%;">인계자 (인)</td> <td style="width: 15%;">일 자</td> <td style="width: 15%;">인계자 (인)</td> </tr> <tr> <td></td> <td>인수자 (인)</td> <td></td> <td>인수자 (인)</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일 자	인계자 (인)	일 자	인계자 (인)		인수자 (인)		인수자 (인)								
일 자	인계자 (인)	일 자	인계자 (인)																		
	인수자 (인)		인수자 (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현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우리시 조직개편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의 신축적 운영 근거 마련(제4조)

○작성 서식이 업무의 성질 또는 통계관리상 부적합할 경우는 실정에 맞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우리시 조직에 맞도록 관련명칭 정비(제7조, 제8조)

○실·국·과·계장 → 실·국·관·과장·담당관 등

다. 사무인계인수사항 별표 및 별지서식 조정(별표 및 별지서식)

(1)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항목 통합

- 역점추진업무 목록 ┌
-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주요사업추진현황
-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 비품목록 ┌ →비품목록
- 장비목록 └

(2) 용어의 정비

- 전 문 직 → 계약직
- 실 · 과 → 과·담당관
- 준연구문서 → 20년, 30년으로 구분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고 건 ①

●서울특별시규칙제3008호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서울특별시(제9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시”라 한다)행정을 감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지위) 시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2.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나 불편·부담의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시민감사관의 구성 등

제5조(구성) ①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미만인 자로 하되 서울특별시감사자문

<p>위원회(이하 “감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원에서 3급이상 감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대검찰청 등에서 3급이상 검찰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서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p>제6조(대표시민감사관) ①대표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정한다.</p> <p>②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을 대표하며 시민감사관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p> <p>③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65세에 달한 날이 있는 달의 말일에 당연퇴직된다.</p> <p>②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1조 각호의 1의 직에 겸직하게 되 	<p>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기타 시민감사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 <p>③시민감사관이 제2항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여 면직될 경우에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 3 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등</p> <p>제8조(직무 및 권한) ①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감사관에게 직접 접수되는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처리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이하 “행정감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 사항에 대한 감사 3. 시의 실·국장, 자치 구청장이 요청한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이하 “감사”라 한다) 4. 시장 및 시의회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5. 시민감사관의 발의에 의한 특정한 사안의 감사 6.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당해 고충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관계행정기관(이하 “당해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중재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관련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당해기관의 조치결과 회보 요구
---	---

<p>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의 공표</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거나 이용·제공·열람이 제한되는 사항 8. 신청인이 당해 고충민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9.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기타 시민감사관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9조(관할) 시민감사관이 제8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4. 국비 또는 시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시 사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p>제10조(직무수행방법) ①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표시민감사관이 지정하는 사안은 시민감사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p> <p>②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시민감사관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제11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직을 겸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4.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5. 시민감사관의 관할대상에 속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p>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조사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시민감사관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호주·가족·기타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시민감사관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시민감사관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p>②고충민원의 신청인과 당해기관의 장은 시민감사관에게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시민감사관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	--

에는 스스로 그 고충민원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 4 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 시민감사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를 통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당해 기관의 명칭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6.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개시한 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범위 이외의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를 완료한 경우 또는 실시중인 조사를 중지하는 등의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시민감사관은 제14조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당해기관 또는 당해공무원은 시민감사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기관에 대한 관계 자료·서류의 제출, 현장조사에의 참여 및 고충민원 등에 대한 정황설명 등의 요구
2.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임·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제16조(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시민감사관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 또는 조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시민감사관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장에게 시정·징계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당해기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당해기관의 공무원·임·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민감사관에게 그 의

<p>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18조(결정의 통지) 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당해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9조(당해기관의 의무 등) ①당해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관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당해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시민감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5 장 시민감사청구사항처리</p> <p>제20조(시민의 감사청구)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청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감사청구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5.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p>제21조(감사청구의 대상) ①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대상기관(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 직무 2.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행한 직무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송중에 있는 사항 2. 시의회에 관한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사항 4. 감사자문위원회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p>제22조(청구인의 자격) ①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단체. 다만 단체의 설립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록·허가 등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필하여야 한다. 2.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로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직능단체 3. 감사청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시민 3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대표자. <p>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민 및 단체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 한다.</p> <p>제23조(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①시민감사관은 시민으로부터 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감사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시민감사관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즉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p>③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감사완료가 어려울 때 : 30일 범위내 2.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나 감사원 등에서 감사·조사중인 사안 : 수사나 조사 등의 종결 통보일로부터 30일 범위내 <p>④시민감사관은 감사청구사항이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행정감시 등</p> <p>제24조(직권 또는 요청에 의한감사) ①시민감사관은 시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발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을 채택하여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②시민감사관은 시의 실·국장 및 자치구청장이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감사요청이 있는때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5조(감사의뢰) ①시장 또는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시민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6조(시민의 감사 참여) ①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p>	<p>한 감사,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정한 사안을 감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청구인, 시민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감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7조(공표) 시민감사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과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8조(준용) ①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방법, 지정·징계 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감사결과의 통지, 당해기관의 의무, 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시민감사관을 지원하는 감사공무원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감사규칙을 준용한다.</p> <p>제29조(사무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민감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제30조(여비 등)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1조(보고) 시민감사관은 매년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p>
---	--

<p>제32조(운영세칙) 시민감사관의 조직·인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지규정)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 규정(훈령 제857호)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시민감사관운영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시민감사관세부운영지침('98. 9. 19 부시장 방침 제268호)과 시민감사관 임용, 고충민원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감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1.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5조(시민감사청구 사항처리)</p> <p>①시장은 시민으로부터 감사대상기관(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직원이 행한 직무에 관하여 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감사청구의 대상, 감사청구인의 자격, 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실시 등 시민감사청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	--

〈별지 제1호서식〉

시 민 감 사 청 구 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참조 : 시민감사관

청구일자 :

1. 청 구 인 체	개 인	① 청 구 인(대표자)		②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단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화)
		⑤ 단 체 이 름				
		⑥ 대 표 자		⑦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 체 설 립 목 적				
		⑪ 허가·신고·등록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 원 의 수				
		⑭ 연 락 전 화	전화	F A X		
2. 청 구 동 기						
3. 감사청구사항						
4. 관련증빙자료 (있는 경우)						
5. 기타(관련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 시민(300인이상)이 연서한 서류(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붙임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청구인 대표</div> <div style="text-align: right;">(인)</div>						

<뒷 면>

작 성 요 령

1. 감사청구인

<개인> -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 구 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안에 대표자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상의 300인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할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 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 (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 개인 (300인이상연서) 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단체 (단체의 설립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록·허가 등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필하여야 함)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로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직능단체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단체의 설립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쓰고 신고 등이 불필요한 경우 빈칸으로 둡니다.

2. 청 구 동 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이상 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4.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5. 기 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 (300인이상) 이 연서한 서류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여부 심의결과 통보

년 월 일 귀하(단체)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운영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한 시민감사청구사항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같은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합니다.

청 구 인		대 표 자	
청 구 일 자		심 의 일 자	
감사청구내용 (요 지)			
심 의	감 사 결 정		
	결 과	감 사 불 가 (사유)	

<별지 제3호서식>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통보

1. 감사청구사항

- 가. 청구인 : 대표자 :
- 나. 청구일자 :
- 다. 청구요지 :

2. 감사개요

- 가. 감사기간 :
- 나. 감사대상기관 :
- 다. 감사반 편성 :
- 라. 감사방법 :

3. 감사결과

- 가. 중점 감사사항(청구인의 주장사항 등)
- 나.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 다.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라.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종합의견
- 마. 기타 특기사항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아울러 행정감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사항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시민감사관이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1) 시민감사관은 시장 소속하에 두고 3인 이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2조, 제5조)
- (2) 시민감사관은 3급이상 감사직, 검찰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경력자와 변호사 또는 주요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제5조)
- (3)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정년은 65세로 함(제7조)
- (4) 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 시의 실·국장,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 시장 및 시의회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직권에 의한 감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 감사과정에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24~26조)
- (5) 시민감사관은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정당원 등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1조)
- (6) 시민의 고충민원의 신청 및 이에 대한 조사방법, 처리절차, 관계행

정기관의 의무 등에 대하여 정함(제13조~제19조)

- (7) 시민감사관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서 정한 시민감사청구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고 청구의 방법, 청구 대상, 청구인의 자격 및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등에 대하여 정함. (제20~23조)
- (8) 시민감사관은 연2회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1조)
- (9) 시민감사관이 시민감사청구사항을 관장함에 따라 행정감사규칙관련 조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부칙 제4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고 건 ㉠

●서울특별시규칙제300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2조(사용허가)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

<p>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p> <p>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 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3조(회원권 발급에 대한 사용료)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을 발급할 경우의 사용료는 조례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p> <p>제4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중 중계방송료는 소장이 발부하는 납입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조례 별표5의 상업사용료 중 기타물품 판매에 대한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판매액은 “(반입량 - 판매잔량)×판매단가”에 의하여 산출한다.</p> <p>③조례 별표5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선전책자판매, 기타 물품(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으로부터 임시판매사용허가(별지 제8호서식)를 받아 물품 등을 판매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판매를 허가받은 자는 물품 등을 반입하기 전에 그 사실을 소장에게 신고(별지 제9호서식)하</p>	<p>고, 소장으로부터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⑤조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습사용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p> <p>제5조(관람권의 발행)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종류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학생) 5.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6. 초대권 7. 기타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p>②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③소장은 관람권발행자에 대하여 조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본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관람권 금액의 2할(체육이외 행사 및 프로경기는 2.5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④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프로경기는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체육행사로 보아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p> <p>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관람권은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소장은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소지자를 당해 체육시설에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정산 후 소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p> <p>제7조(입장권 등)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p>
--	---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9조제1항제4호 규정의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조례 제13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소장은 입장이 거절된 자에 한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무대행자 신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당해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의 위탁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 (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행정관리국장
2. 문화관광국장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 서울특별시의회 관계 의원 2인
5. 시정개혁실무위원 1인
6. 공인회계사 1인
7. 감정평가사 1인
8. 전문체육인 1인 및 생활체육전문인 1인
9. 체육시설마케팅 전문연구원 1인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운영 위탁 공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시설명·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탁신청 등)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7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관

<p>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4조(관리·운영계약 등)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수탁자는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는 위탁기간 만료</p>	<p>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년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p> <p>②시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보 칙</p> <p>제18조(사무의 위임) 조례 제2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탁에 관한 사무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는 제3장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보고 등) 소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검사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사용허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사용료 부과·감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된 경우의 사무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	---

③(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이 위탁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한다.

④(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규칙 제1803호)과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위탁관리·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제2385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사용 구분	전 용 사 용	중 계 방 송	상업사용	부속시설 사용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 내용	TV중계·녹화라디오 중계·녹음경기(행사) 촬영						
경기(행사)명							
사용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주간	일
임원 및 지도 요원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방송(촬영)요원	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작성	특 별 관 램 권		원/매	매			
	일 반 관 램 권		원/매	매			
	군 경 학 생 관 램 권		원/매	매			
	단 체 관 램 권	일 반	원/매	매			
		군경학생	원/매	매			
초 대 권			매				
기 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수 수 료		년 월 일					
550원		신청인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첨부 : 전용사용 및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사용 구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 내용							
경기(행사)명							
사용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주간	일
	년	월	일	시	까지	야간	일
관 램 권 또는 기타							
허가 조건							
<p>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p>							

【별지 제3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허가 사항	당 초 허 가 사 항	변 경 신 청 사 항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		
관 램 권 또는 기타				
허가 조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수 수 료	년 월 일			
550원	신청인	(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허가 사항	당 초 허 가 사 항		변 경 허 가 사 항	
사용 구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 내용				
경기(행사)명				
사용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주간 일, 야간 일)	
관 램 권 또는 기타				
허가 조건				
<p>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p>				

【별지 제5호 서식】 (제2조제3항 관련)

수입금 납입 명세서

제 호	원 부				
허 가 번 호	대 회 명				
	주최 및 대표자명				
구분 사용료	운 동 장 명 또는 사용시설명	연 도	기 분	금 액	비 고
기본전용사용료					
할부전용사용료					
중 계 방 송 료	T V				
	라 디 오				
상 업 사 용 료					
부속시설사용료					
기 타					
계					
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div>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입금 출납원		(인)	
		취 급 자		(인)	

(계속)					
제 호	수 입 보 고 서				
허 가 번 호	대 회 명				
	주최 및 대표자명				
구분 사용료	운 동 장 명 또는 사용시설명	연 도	기 분	금 액	비 고
기본전용사용료					
할부전용사용료					
중 계 방 송 료	T V				
	라 디 오				
상 업 사 용 료					
부속시설사용료					
기 타					
계					
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입금 출납원		(인)
			취 급 자		(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제 호	영 수 증 서						
허 가 번 호	대 회 명						※복사하지 않은 것과 취급자 도장이 없는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주최 및 대표자명						
구분 사용료	운동장 명 또는 사용시설명	연 도	기 분	금 액	비고		
기본전용사용료							
할부전용사용료							
중 계 방 송 료	T V						
	라 디 오						
상 업 사 용 료							
부속시설사용료							
기 타							
계							
위와 같이 영수함.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입금 출납원 (인)</p> <p style="text-align: right;">취 급 자 (인)</p>							

【별지 제7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중계방송료납입통지서 (원본)				납 입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서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납 입 자	주 소			납 입 자	주 소			납 입 자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방송국명, 대표자명)				(방송국명, 대표자명)				(방송국명, 대표자명)															
납기내		가산금	합 계	납기내		가산금	합 계	납기내		가산금	합 계												
위 경기(행사)중계방송료를 년 월 일까지 은행(지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행사)중계방송료 납입마감 : 년 월 일까지 납입장소 : 은행				경기(행사)중계방송료를 위와 같이 납입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징수관(인)				은행				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징수관(인)				은행				은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40px;"> <tr> <td style="width: 25%;">수납 은행 일부인</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취급 자인</td> <td style="width: 25%;"></td> </tr> </table>				수납 은행 일부인		취급 자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40px;"> <tr> <td style="width: 25%;">수납 은행 일부인</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취급 자인</td> <td style="width: 25%;"></td> </tr> </table>				수납 은행 일부인		취급 자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40px;"> <tr> <td style="width: 25%;">수납 은행 일부인</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취급 자인</td> <td style="width: 25%;"></td> </tr> </table>				수납 은행 일부인		취급 자인	
수납 은행 일부인		취급 자인																					
수납 은행 일부인		취급 자인																					
수납 은행 일부인		취급 자인																					
(은행보관용)				(납부통보용)				(납입자보관용)															
※ 은행의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

임시판매 사용신청서

신청인 주소		연락처 (전화)	
상호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용 구 분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명	
사 용 기 간		판 매 인 원	외 명
사 용 료	총판매액의 %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임시판매 사용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상호 성명 (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임시판매 사용허가서

주 소		연락처 (전화)	
상호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용 구 분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명	
사 용 기 간		판 매 인 원	외 명
사 용 료	총판매액의 %	기 타 사 항	

따로붙임과 같이 허가조건을 붙여 임시판매 사용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따로붙임 : 허가조건 1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별지 제9호서식】 (제4조제4항 관련)

물품 반입(잔량) 신고서

- 1. 일 시 :
- 2. 장 소 :
- 3. 매 점 명 :

물 품 명	단 위	반 입 량	판매잔량	판매가격	총판매액	비 고

위와 같이 물품 반입(잔량)을 신고합니다.

신 고 자 : 상호	년 월 일	성명	(인)
확 인 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앞면)

23	8	9	10	11	12
22	○ ○ 연 습 사 용 권 { 대 인 용 } { 소 }				13
21	일금 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4
20	19	18	17	16	15

- 주 : 1. 연습사용료와 사용시간이 같은 것은 한 종류의 연습사용권으로 인쇄한다.
- 2.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 3. 대인용 소인용으로 구분하여 인쇄한다.
- 4. 중앙마크는 다른 색으로 인쇄한다.

(뒷면)

주 의

1. 본 연습사용권은 입장할 때 관계직원에게 제시하고 퇴장할 때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2. 본 연습사용권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연습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7조 관련)

입 장 권

(대)
	인 용
(소)

일금 원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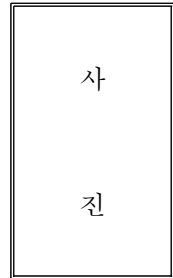
- 주 : 1. 대인 소인별로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2. 마크는 다른 색으로 인쇄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7조 관련)

(앞면)

제 호

출 입 증



소속 (주소)

직위 (직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유효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뒷면)

주 의

- 1. 본 증서는 타인에게 양여할 수 없다.
- 2. 본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3. 본 증서 소지자는 관람권 발행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다.
- 4. 본 증서는 운동장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별지 제13호서식】 (제9조 관련)

사무대행자지정 신고서

경기(행사) 명 :

사무대행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관리, 현금출납 등 본 경기(행사)에 관한 사무 대행자로 지정하였기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

(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				
신 청 인	(전화번호 : -)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망시설명				
<p>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p>				
첨부서류	1.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2. 단체 등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음
3. 사업계획서(조례 제17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별지 제15호서식】 (제15조 관련)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기간연장신청서						
신 청 인			(전화번호 : -)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간	당 초	-		연 장	-	
사 유						
시 설 명						
<p>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p>						
첨부 서류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p>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p> <p>2. 주요골자</p> <p>가.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의 월간 사용료 산출기준과 상업사용료 중 기타 물품판매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정함(제3조 및 제4조)</p> <p>(1) 회원권 발급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민체육센터 및 골프장 등 사용료 적용</p> <p>(2) 기타물품판매사용료 : (반입량 — 판매잔량) × 판매단가</p> <p>나. 체육시설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임시판매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를 정함(제4조제4항)</p> <p>○ 물품 반입전에 소장에게 신고 및 검수확인</p> <p>다. 관람권의 발행종류·발행조건 및 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람권 발행자에 대한 사용료 예치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6조).</p> <p>(1) 종류 : 특별관람권, 일반관람권, 군경 및 학생관람권, 단체관람권, 어린이관람권, 초대권 등</p> <p>(2) 발행조건 : 사용허가 신청시 기재한 내용대로 발행</p> <p>(3) 사용료 예치 : 관람권 금액의 2할 또는 기본전용사용료</p> <p>(4) 검인 : 소장(검인없는 관람권 소지자 입장 불가)</p> <p>라. 운영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제10조 내지 제17조)</p> <p>(1)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 선정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p> <p>※ 구성·운영</p>	<p>○위원장 : 행정 (1) 부시장</p> <p>○위원 :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리국장 - 문화관광국장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시의원 -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 -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전문인 - 체육시설마켓팅 전문연구원 등 <p>○간사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주관과장(체육청소년과장)</p> <p>○위원 제척 : 체육시설의 위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p> <p>(2) 관리·운영위탁 공고 : 일반 또는 제한경쟁으로 수탁자 선정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내용 :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기간 등 <p>(3) 운영위탁 신청 등 : 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재산현황 <p>(4)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 선정</p> <p>(5) 관리·운영 계약의 체결 : 수탁자 선정후 30일 이내</p> <p>○계약체결기간 경과에 대한 조치 : 계약 포기로 처리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내에서 기한 연장 가능 <p>○계약체결자 의무 : 제3자에 재위탁 또는 대리운영 불가</p> <p>(6) 수탁관리·운영기간 만료후의 조치 : 운영 기간 연장 가능</p> <p>○운영기간의 연장 신청 : 수탁자가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p> <p>○운영기간 연장 결정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p>

(7) 수탁자 지도 및 감독 : 검사 등 실시
 ○ 검사주기
 - 정기검사 : 년 1회
 - 수시검사 : 민원발생,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필요한 경우 실시
 ○ 검사내용 :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 이행여부 등
 마. 다른 규칙의 폐지(부칙 제4항)
 ○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위탁관리·운영에관한규칙(규칙 제1803호) 및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규칙 제2385호)은 폐지함.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고 건 ㉠

●서울특별시규칙제3010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①지원금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금 지급요구를 받았을 때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의 의결사항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본문중 “주민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청소기획관”을 “환경관리실장”으로, “폐기물시설과장”을 “폐기물시설과 시설운영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신청인 : 서울특별시 ○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를 “신청인 : 서울특별시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주민지원금의 집행한도액을 조정하는 등 주민지원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민지원금 집행한도액 조정(제4조 제1항)
 · (현행) 기금의 70% 범위내 → (개정) 기금의 범위내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고 건 ㉠

●서울특별시규칙제3011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소위원회”를 “심의소위원회”로 “기술심사담당관실”을 각각 “기술심사담당관 소속”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조례 제2조제2항제1호의 건설업무와 관

<p>련된 4급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2.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국장, 시설국장, 시설관리1부장, 건축부장 3.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차장, 설계감리부장, 전기부장 4.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p>④자문소위원회의 간사 등은 자문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안전관리본부 관련사항 :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부서 5급공무원(간사), 담당공무원(서기) 2. 지하철건설본부 관련사항 : 지하철건설본부 소관부서 5급공무원(간사), 담당공무원(서기) <p>제3조제1항본문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제3조제3호”를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p> <p>제4조본문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호본문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p> <p>제5조제1항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의뢰하여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한다.</p> <p>제6조제1항중 “심의요청자”를 “심의 또는 자문요청자”로 하고,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심의요청자”를 “심의 또는 자문요청자”로 한다.</p> <p>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에는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7조제1항본문중 “제3조제1호·제2호”를 “제3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제3조제3호”를 “제3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제3조제3호”를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p> <p>제7조의2제1항제2호중 “10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p> <p>제8조중 “심의완료”를 “심의 또는 자문완료”로 한다.</p> <p>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1조(심의수수료 납부)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수수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②기타 수수료 납부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제12조(중전의 제11조)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p> <p>〈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별지 제8호서식]

채 점 표

의 안 명 :

전문분야 :

분 야	배 점	입찰사별 채 점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1.							
2.							
3.							
계							

※ 입찰자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4인까지는 배점의 5%이상의 격차를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본인은 상기 안건의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심의함에 있어 입찰참여 업체에 설계등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았으며, 양심과 소신에 따라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채점하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회 위원장 귀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심의 관련 위원회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 및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당연직 위원 확대 : 1명(기술심사담당관) → 12명(제2조제2항)

- (1) 시 도로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 (2) 건설안전관리본부(4명), 안전관리국장, 시설국장, 시설관리1부장, 건축부장
- (3) 지하철건설본부(3명) 차장, 설계감리부장, 전기부장
- (4)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례개정되어 당연직 위원 제외

나.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서에 대한 설계채점 기준을 일부 변경(제7조의2제1항제2호)

○(현행) 우수순위에 따라 4인까지는 **10퍼센트** 이상 차이를 둠.

○(개정) 우수순위에 따라 4인까지는 **5퍼센트** 이상 차이를 둠.

※ 건설교통부지침('99 턴키 대상공사 선정 심의운영 지침) 반영하여 기술적 변별력과 가격경쟁력 강화다. 심의수수료 부과·징수절차 규정(제11조)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토록 하고, 기타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과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9-140호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하였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 지정목록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有形文化財	113호	地藏寺掛佛	1幅	地藏寺	동작구 동작동 280
"	114호	地藏寺 大雄殿 阿彌陀會上圖	"	"	"
"	115호	地藏寺 大雄殿 極樂九品圖	"	"	"
"	116호	地藏寺 大雄殿 甘露王圖	"	"	"
"	117호	地藏寺 大雄殿 地藏十王圖	"	"	"
"	118호	地藏寺 大雄殿 神衆圖	"	"	"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소유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有形文化財	119호	地藏寺 大雄殿 現王圖	"	"	"
"	120호	地藏寺 大雄殿 八相圖	"	"	"
"	121호	滿月庵 石佛坐像	1座	滿月庵	도봉구 도봉동 산29
서울특별시 文化財資料	3호	地藏寺 能仁寶殿 後佛幀畫	1幅	地藏寺	동작구 동작동 280
"	4호	地藏寺 能仁寶殿 神衆圖	"	"	"
"	5호	地藏寺 三聖閣 七星圖	"	"	"
"	6호	地藏寺 三聖閣 獨聖圖	"	"	"
"	7호	地藏寺 三聖閣 山神圖	"	"	"

2. 지정일자 : '99. 5. 19.

●서울특별시고시제1999-141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4의2~92의3호간의 3건 하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인가하고, 하수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하수계획과(☎3707-9931), 영등포구청 치수과(☎670-3415)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 명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나. 사업시행의 목적 : 환경이 협소하고 경사가 불량한 하수암거 및 하수관의

관경 확대 및 경사조정으로 하수소통 원
활등

-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별항
- 설치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별항
-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별항
- 사업시행기간 : 별항
-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별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 별항

공 공 하 수 도 설 치 인 가 조 서

일련 번호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시설의 종류 및 명칭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사업시행 기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등			
								소 유 자		이 해 관계인	구분	지 번	지목	소유권의 리
								성 명	주 소					
1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4의2~92-3호간	10,107.5	관거	합류식관 D=900mm, L=104m	안양	가양	'99.3 ~ '99.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토지 " "	영등포구1가 97-3 영등포구1가 95-1 영등포구1가 94-4	도로 도로 도로	
2	영등포구 신길6동 4336번지 주변	14,001	관거	합류식관 □2.0×2.0m L=263m	안양	가양	'99.4 ~ '99.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한국천주교 서울특별시 정귀섭외5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신월동 195-1		토지 " " " " " " " "	신길동 4490 신길동 4499 신길동 4491-1 신길동 4494-1 신길동 4501 신길동 4509-1 신길동 4518-1 신길동 4522 신길동 4522-1	도로 도로 대지 도로 대지 도로 도로 도로 대지	
3	영등포구 대림1동 893~906번지간 일대	27,271	관거	합류식관 □2.0×1.5m L=427m	안양	가양	'99.4 ~ '99.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토지 " " " " " " " "	대림동 697-2 대림동 824-34 대림동 824-40 대림동 762-7 대림동 760-19 대림동 756-1 대림동 756-3 대림동 906-106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4	영등포구 신길동 34번지 신길빛물 펌프장 북측일대		관거	합류식관 D=1,350mm L=76.86m D=1,650mm L=244.2m	노량진	가양	'99.3 ~ '99.12	국(건설부) 국(건설부) 영등포구 영등포구 국(철도청) 서울특별시 국(철도청)			토지 " " " " " "	신길동 4899-1 신길동 17-7 신길동 17-8 신길동 20-8 신길동 42-72 신길동 57-6 신길동 57-7	도로 도로 구거 구거 철도용지 구거 철도용지	

●서울특별시고시제1999-142호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71호('98. 10. 27)로 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 제1998-71호('98. 11. 10)로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9-242호('99. 3. 31)로 도시계획시설(하천)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공람공고된 강동구 하일동 145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하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치수과(☎ 3707-9951) 및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4801-402)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하일동 145 ~ 강동구 고덕동 77-5일대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인가
- 다. 사업의 명칭 :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 공사
- 라. 사업의 내용 : 제방축조 2,242m, 수문 2개소등
- 마. 결정고시일자 : 1998년 10월 27일
- 바. 지적고시일자 : 1998년 11월 10일
- 사. 인가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간
- 아.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한강관리사업소장)
-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차.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및 이해관계인 : 별항 토지 및 물건조서

토 지 조 서

(하천구역내 토지)

(하일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지적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하일동 14-1	하천	24	24	천	김기석	마포구 하수동 13-1 아파트 B-201				
2	153-4	전	104	104	전	김재영	강남구신사동 554-33 지동 101				
3	153-5	전	325	325	전	김재준	강동구 하일동 153	하일새마을 금고	하일동 351-3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4	155-11	잡	499	499	전	이강훈	강남구 압구정동 40 한양(아) 32-1301				
5	156-9	전	98	98	전	이길수	명일동 아파트 816				
6	고덕동 60-1	전	146	146	전	한장홍	동대문구 제기동892-111				
7	60-9	전	173	173	전	"	"				
8	61-1	전	160	160	전	"	"				
9	61-6	전	93	93	전	"	"				
10	62-3	전	84	84	전	김호원	송파구 잠실동 320 우성(아) 103-905	강덕희	노원구 상계동 1121-27	근저당권	
								전영복	성동구 중곡동 150-69	"	
								위성현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218	"	

(고덕동)

일련 번호	소재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1	고덕동 63-2	전	118	118	전	광주노씨 경평공파	도봉구 상계동 125	강동구청	세관 13410-9665	압 류		
12	63-7	전	56	56	전	"						
13	64-1	전	85	85	전	한 장 흥	동대문구 제기동892-111					
14	65	전	4,056	4,056	전	윤 정 분	종로구 신교동 17-1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가압류		
								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가압류		
								우신상호 신용금고	군포시 당정동 12-3 군포시 산동동 213-7	근저당권		
								김 상 택	도봉구창동45삼성(아) 113-1104	근저당권		
15	66-3	전	1,166	1,166	전	이 호 분	강동구 천호동 164-92				3/15	
						어 경 춘	강동구암사동 475-55 상신연립 105호					2/15
						어 경 하	강동구 길동 154-3					2/15
						어 경 택	강동구 천호동 164-92					2/15
						어 경 소	천호동 243-143					2/15
						어 경 예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28					2/15
						어 경 희	강동구 암사동 489-78					2/15
16	고덕동 67-1	전	237	237	전	이 동 수	강동구 명일동 143					
17	68-1	전	44	44	전	황 선 하	용산 이태원동 260-146					
18	68-7	전	171	171	전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지적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9	73-1	전	496	496	전	이길수	강동구 명일동 143				
20	73-3	전	1,154	1,154	전	"	"				
21	73-4	전	2,219	2,219	전	"	"				
22	74-6	전	753	753	전	성윤임	성북구 안암동5가 134-63				
23	75-1	전	2,496	2,496	전	지용대	성북구 장위동 297-21	성북구청		압류	
								성북세무서		압류	
								임의경매	의정부시 가능동 620-21	홍채완	
								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상계북지점)	근저당권	
								북부농협	도봉구 쌍문동 619	"	
								홍채완	의정부시 가은동 620-21	"	
								윤순이	"	"	
								제선자	도봉구 창동 527-11	"	
							김정순	의정부시 금오동 417-12	"		
24	75-4	전	1,209	1,209	전	김장태	강동구 명일동 326-9				12/20
						이춘순	"				1/20
						김신태	강동구 암사동 501-21				2/20
						김선욱	명일동 326-9				1/20
						김성순	"				1/20
						김왕태	"				2/20
						김미영	강동구 명일동 326-9				1/20
25	고덕동 75-3	전	1,180	1,180	전	김장태	강동구 명일동 326-9				12/2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지적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이춘순	"				1/20
						김신태	강동구 암사동 501-21				2/20
						김선옥	명일동 326-9				1/20
						김성순	명일동 326-9				1/20
						김왕태	"				2/20
						김미영	"				1/20
26	고덕동 76-6	전	809	809	전	성윤임	성북구 안암동5가 134-63				
27	76-2	전	2,129	2,129	전	김중복	하남시 덕풍동 519-4 크로바연립 A-203				1/3
						김분재	강동구 고덕동 298				1/3
						김명순	송파구 마천동 85-12				1/3
28	77-6	전	1,875	1,875	전	김태남	종로구 창신동 640-208				1/2
						김재영	강북구 수유동 648 수유벽산(아) 201-502				1/2
29	80-40	전	1,093	1,093	전	윤정본	종로구 신교동 17-1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가압류	
								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가압류	
								우신상호 신용금고	군포시 당정동 12-3 군포시 산본동 213-7	근저당권	
								김상택	도봉구 창동 45삼성(아)113-1104	"	
30	고덕동 80-41	전	2	2	전	함진철	강동구 천호동 15-7				
31	80-43	전	1,128	1,128	전	광주노씨 광주공파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삼방리 44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지적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32	80-42	전	822	822	전	윤정본	종로구 신교동 17-1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가압류	
								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가압류	
								강동구청	세관 13410-1912	압류	
								우신상호 신용금고	군포시 당정동 12-3 군포시 산본동 213-7	근저당권	
								김상택	도봉구 창동 45삼성(아)113-1107	"	
33	80-44	전	178	178	전	최성녀	강동구 고덕동 374				
34	367-13	전	509	509	전	최귀남	강동구 명일동 305-13			1/2	
						최창규	강동구 천호동 310-9			1/2	
35	367-14	전	572	572	전	조정애	노원구 월계동 448-3 삼창(아) A-905				
36	369-12	전	3,352	3,352	전	김홍제	종로구 효제동 175-10	강동구청	세무과	압류	
37	369-13	구거	333	333	구거 (도로)	광주농지 개발조합	광주군 동부면 덕풍리 418-1				
38	369-14	전	461	461	전	이경하	강동구 고덕동 638-2				
39	고덕동 369-6	전	1,174	1,174	전	조성효	관악구 봉천동 729-22 롯데스카이(아) 2201				
40	365-2	전	330	330	전	김정혁	용산구 이촌동 302-86				
41	365-10	전	260	260	전	김정혁	용산구 이촌동 302-86				
42	366-4	전	371	371	전	김갑섭	동대문구 장안동 380-1 삼보선경연립 A-101				
43	366-5	전	13	13	전	최병근	강동구 고덕동 산102-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지적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44	366-6	전	1,032	1,032	전	어수백	강동구 고덕동 646-1				1/3
						어수창	강동구 고덕동 657				1/3
						어영자	강동구 고덕동 531-4				1/3
45	366-19	전	1,221	1,221	전	김갑섭	동대문구 장안동 380-1 삼보선경연립 A-101				
46	367-3	구거	53	53	전	최병일	강동구 고덕동 78				
47	고덕동 367-6	전	1,670	1,670	전	김기재	동대문구 장안동 380-1 삼보선경연립 A-101				
48	369-7	구거	447	447	구거	광주농지 개발조합	광주군 동부면 덕풍리 418-1				
49	372-3	전	1,553	1,553	전	김승욱	종로구 원남동 38				
50	372-6	전	516	516	전	김승욱	"				
51	374-3	전	1,588	1,588	전	조성효	관악구 봉천동 729-22 롯데스카이(아) 2201				1/2
						한재욱	은평구 불광동 170-110	조정구	순천시 지전동 235-21	근저당권	640.5/ 1281
52	374-12	전	1,440	1,440	전	조성효	관악구 봉천동 729-22 롯데스카이(아) 2201				1/2
						한재욱	은평구 불광동 170-110	조정구	순천시 지전동 235-21	근저당권	640.5/ 1281
53	374-14	전	140	140	전	조성효	광진구 광장동 145-8				1/2
						한재욱	은평구 불광동 170-110				640.5/ 1281

일련 번호	소재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54	고덕동 376-7	전	608	608	전	임 택 상	상일동 주공(아)621-302				772.5/ 2496
						윤 의 중	고덕동 주공(아)222-202				772.5/ 2496
						이 용 식	명일동270 삼익(아)8-906				951/ 2496
55	376-9	전	144	144	전	임 택 상	상일동 주공(아)621-302				772.5/ 2496
						윤 의 중	고덕동 주공(아)222-202				772.5/ 2496
						이 용 식	명일동270 삼익(아)8-906				951/ 2496
56	377-2	전	13	13	전	유 창 선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10-1504	잠실세무서	재산 46300-1055	압 류	
57	377-5	전	795	795	전	"	"	잠실세무서	재산 46300-848	압 류	
58	377-7	전	34	34	전	"	"	최 정 숙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리 9281 채프맨애비뉴 9411	근정당권	
59	379-6	전	1,310	1,310	전	안 중 선	성동구 자양동 600-1				
60	고덕동 382	전	696	696	전	최 귀 남	강동구 명일동 305-13				
61	388-16	하천	80	80	하천	어 우 경	성동구 구의동 210-58				
62	388-17	하천	5	5	하천	어 우 경	"				

제 2191호

시

보

1999. 5. 25. (화)

일련 번호	소재지 번호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63	388-19	전	4	4	전	어우경	"				
64	387	전	1,465	1,465	전	성두현	종로구 신문로2가 1-185	박천권	중구 신당동341-16	소유권이전 청구권등기	
65	387-5	전	200	200	전	"	"				
66	387-6	전	9	9	전	"	"				
67	387-7	전	3,232	3,232	전	"	"				
68	387-8	전	2	2	전	"	"				
69	387-4	전	89	89	전	"	"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덕동 387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167.4	시금치	홍 천 균	송파구 풍납동 159-15	
2	"	"	"	199.8	시금치	"	"	
3	"	"	"	256.5	배 추	"	"	
4	"	"	"	275.4	파	"	"	
5	"	"	"	318.6	아 옥	"	"	
6	"	"	"	337.5	호 박	"	"	
7	"	"	"	356.4	오 이	"	"	
8	386	"	"	453.6	상 추	"	"	
9	"	"	"	437.4	"	"	"	
10	"	"	"	432	"	"	"	
11	고덕동 386	"	"	399.6	오 이	홍 천 균	송파구 풍납동 159-15	
12	"	"	"	394.2	"	"	"	
13	"	"	"	334.8	"	"	"	
14	387	"	"	155	상 추	"	"	
15	"	"	"	265	아 옥	"	"	
16	"	"	"	315	오 이	"	"	
17	"	"	"	315	상 추	"	"	
18	"	"	"	315	"	"	"	
19	379-2	"	"	216	상 추	어 수 안	강동구 하일동 352-19	
20	"	"	"	612	"	"	"	
21	고덕동 379-2	"	"	588	상 추	어 수 안	강동구 하일동 352-19	
22	"	"	"	570	"	"	"	
23	"	"	"	552	"	"	"	
24	381	"	"	529.2	파	심 태 섭	강동구 천호동 121-26	
25	"	"	"	523.8	"	"	"	
26	"	"	"	518.4	"	"	"	
27	"	"	"	513	"	"	"	
28	"	"	"	457.2	"	"	"	
29	381-2	"	"	303	열 무	"	"	

일련 번호	소재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30	"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306.3	"	"	"	
31	고덕동 381-2	"	"	309.6	열 무	심 태 섭	강동구 천호동 121-26	
32	"	"	"	313.9	"	"	"	
33	"	"	"	319.2	"	"	"	
34	"	"	"	318.9	파	"	"	
35	"	"	"	320.2	"	"	"	
36	"	"	"	318	"	"	"	
37	"	"	"	296.8	배 추	"	"	
38	"	"	"	254.4	"	"	"	
39	"	"	"	159	"	"	"	
40	379-1	"	"	275.4	시금치	김 영 완	강동구 고덕동 275-6	
41	고덕동 379-1	"	"	280.5	치커리	김 영 완	강동구 고덕동 275-6	
42	"	"	"	280.5	호 박	"	"	
43	"	"	"	290.7	파	"	"	
44	379-6	"	"	401.5	오 이	"	"	
45	"	"	"	388.5	호 박	"	"	
46	"	"	"	393.5	상 추	"	"	
47	"	"	"	398.5	오 이	"	"	
48	"	"	"	312.5	상 추	"	"	
49	"	"	"	389.8	시금치	"	"	
50	377	"	"	69	관리용	서 천 석	강동구 고덕동 377	
51	고덕동 379-6	"	"	443.8	상추	김 영 완	강동구 천호동 275-6	
52	"	"	"	323.3	아욱	"	"	
53	"	"	"	250	쭈갓	"	"	
54	"	"	"	112.8	상추	"	"	
55	"	"	"	66	관리용	"	"	
56	376-2	"	"	291.5	파	"	"	
57	"	"	"	297	"	"	"	
58	"	"	"	18.5	자재창고	"	"	
59	374-1	"	"	128	파	박 흥 수	중랑구 중화동 450 한신(아) 109-2704	

일련 번호	소재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60	"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343.2	"	"	"	
61	"	"	"	338	"	"	"	
62	고덕동 374-1	"	"	358.8	상 추	박 홍 수	중랑구 중화1동 450 한신(아) 109-2704	
63	"	"	"	348.4	"	"	"	
64	"	"	"	338	열 무	"	"	
65	"	"	"	348.4	상 추	"	"	
66	372-1	"	"	421.2	오 이	"	"	
67	"	"	"	415.8	"	"	"	
68	"	"	"	356.4	"	"	"	
69	"	"	"	297	"	"	"	
70	"	"	"	240.3	"	"	"	
71	"	"	"	183.6	파	"	"	
72	고덕동 372-1	"	"	129.6	상 추	박 홍 수	중랑구 중화동 450 한신(아) 109-2704	
73	"	"	"	70.2	창 고	"	"	
74	374-3	"	"	220	파	"	"	
75	"	"	"	220	"	"	"	
76	"	"	"	220	"	"	"	
77	"	"	"	220	"	"	"	
78	"	"	"	214.5	"	"	"	
79	374-12	"	"	214.8	파	조 관 수	강동구 고덕동 633-4	
80	"	"	"	207.6	"	"	"	
81	"	"	"	185.5	시금치	"	"	
82	고덕동 374-12	"	"	163.7	시금치	조 관 수	강동구 고덕동 633-4	
83	"	"	"	161.1	"	"	"	
84	372-3	"	"	169.9	상 추	"	"	
85	"	"	"	182.3	"	"	"	
86	"	"	"	180.4	"	"	"	
87	"	"	"	415.8	오 이	"	"	
88	"	"	"	453.7	"	"	"	

일련 번호	소재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89	"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477.9	"	"	"	
90	"	"	"	482.2	"	"	"	
91	"	"	"	521.9	"	"	"	
92	고덕동 372-3	"	"	539.4	상 추	조 관 수	강동구 고덕동 633-4	
93	"	"	"	497.2 81.2	고 추 관리용	"	"	관리사 81.2㎡
94	"	"	"	649.6	상 추	"	"	
95	"	"	"	655.2	고 추	"	"	
96	"	"	"	109	들개	"	"	
97	367-5	"	"	126.5	파	심 태 섭	강동구 천호동 126-26	
98	"	"	"	132	"	"	"	
99	"	"	"	137.5	"	"	"	
100	369-5 367-4	"	"	156	시금치	이 경 하	강동구 고덕동 638-2	
101	"	"	"	168	"	"	"	
102	고덕동 369-5 367-4	"	"	168	시금치	이 경 하	강동구 고덕동 638-2	
103	"	"	"	174	상 추	"	"	
104	"	"	"	186	"	"	"	
105	"	"	"	108	"	"	"	
106	369-1	"	"	367.2	파	한 희 영	강동구 천호동 359-19	
107	"	"	"	372.6	"	"	"	
108	"	"	"	378	"	"	"	
109	"	"	"	394.2	"	"	"	
110	"	"	"	438.6	상 추	"	"	
111	"	"	"	443.7	"	"	"	
112	고덕동 369-1	"	"	448.8	상추	한 희 영	강동구 천호동 359-19	
113	"	"	"	102.6	관리용	"	"	
114	371-1	"	"	453.9	상추	"	"	
115	"	"	"	459	"	"	"	
116	"	"	"	464.1	"	"	"	

일련 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17	"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474.3	"	"	"	
118	"	"	"	474.3	"	"	"	
119	"	"	"	474.3	"	"	"	
120	"	"	"	25	물탱크	"	"	
121	77-1	"	"	45	관리용	이 명 식	강동구 천호동 291-37	
122	고덕동 77-1	"	"	95	오 이	이 명 식	강동구 천호동 291-37	
123	"	"	"	170	"	"	"	
124	"	"	"	235	"	"	"	
125	"	"	"	341.6	"	"	"	
126	"	"	"	403.2	"	"	"	
127	"	"	"	476	"	"	"	
128	76-2	"	"	432	열 무	김 홍 섭	강동구 고덕동 653-1	
129	"	"	"	448.2	상 추	"	"	
130	"	"	"	453.6	"	"	"	
131	"	"	"	464.4	"	"	"	
132	고덕동 75-1, 2, 3	"	"	324	파	김 홍 섭	강동구 고덕동 653-1	
133	"	"	"	324	파	"	"	
134	"	"	"	243	"	"	"	
135	"	"	"	36.4	관리용	"	"	
136	"	"	"	520	시금치	"	"	
137	"	"	"	436.8	"	"	"	
138	"	"	"	327.6	"	"	"	
139	"	"	"	182	파	"	"	
140	"	"	"	374.4	"	"	"	
141	"	"	"	374.4	"	"	"	
142	고덕동 75-1, 2, 3	"	"	379.6	파	김 홍 섭	강동구 고덕동 653-1	
143	76-1	"	"	180	상 추	김 영 생	강동구 고덕동 72	
144	"	"	"	264	"	"	"	
145	"	"	"	348	"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46	74-1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225.5	시금치	"	"	
147	"	"	"	214.5	"	"	"	
148	"	"	"	198	"	"	"	
149	80-9	"	"	64.8	파	합진철	강동구 천호동 15-7	
150	"	"	"	124.2	관리용	"	"	
151	80-11	"	"	196.1	쭉갓	박충근	강동구 고덕동 72	
152	고덕동 80-11	"	"	243.8	쭉갓	박충근	강동구 고덕동 72	
153	"	"	"	318	아욱	"	"	
154	"	"	"	265	"	"	"	
155	73-1	"	"	131.1	고추	강기섭	강동구 고덕동 80-13	
156	"	"	"	36.3	"	"	"	
157	73-3,4	"	"	455.7	도라지	이인수	명일동LG(아) 102-413	
158	"	"	"	455.7	"	"	"	
159	80-10	"	"	245	미나리	변영찬	강동구 고덕동 72	
160	"	"	"	357	"	"	"	
161	"	"	"	371	"	"	"	
162	80-1	조립식막사	조립식 가건물	70	냉동창고	"	"	
163	고덕동 80-1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64.8	고추건조장	변영찬	강동구 고덕동 72	
164	"	"	"	86.4	관리용	"	"	
165	"	"	"	75.6	관리용	"	"	
166	65	하우스	파이프	369.6	고추	"	"	
167	"	"	"	364	"	"	"	
168	"	"	"	352.8	"	"	"	
169	"	"	"	336	"	"	"	
170	"	"	"	308	"	"	"	
171	"	"	"	308	"	"	"	
172	"	"	"	308	"	"	"	
173	"	"	"	308	"	"	"	
174	고덕동 66-1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310	시금치	이인수	명일동LG(아) 102-413	
175	"	"	"	148.8	"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76	67	비닐하우스	비닐/파이프	45	관리용	"	"	
177	"	"	"	48	배 추	"	"	
178	"	"	"	84	오 이	"	"	
179	60-6 68-6	"	"	67.6	오 이	임 경 완	강동구 고덕동 259-4	
180	"	"	"	130	"	"	"	
181	"	"	"	119.6	"	"	"	
182	"	"	"	171.6	쭉 갓	"	"	
183	"	"	"	213.2	시금치	"	"	
184	고덕동 60-6 68-6	"	"	218.4	배 추	임 경 완	강동구 고덕동 259-4	
185	61-4 62-2	"	"	27	파	어 수 안	강동구 하일동 352-19	
186	"	"	"	16.2	시금치	"	"	
187	"	"	"	5.4	쭉 갓	"	"	
188	하일동 156-2	"	"	35	시금치	이 인 수	명일동LG(아) 102-413	
189	"	"	"	30	"	"	"	
190	155-8	"	"	390	부 추	이 충 사	하남시 풍산동 360-10	
191	"	"	"	390	"	"	"	
192	"	"	"	85	"	"	"	
193	"	"	"	85	관리용	"	"	
194	하일동 155-8	수 목	버드나무 복숭아나무	2주 (각 1주)		이 충 사	하남시 풍산동 360-10	
195	고덕동 374-4	건 물	벽돌/기와	83.2	주거용	엄 기 용	강동구 고덕동 374-4	
196	"	"	슬래트/벽돌	18	"	"		
197	"	담 장		1식		"		
198	"	화장실		1식		"		
199	"	수 목	대추나무	2주		"		
200	"	"	밤나무	1주		"		
201	"	"	꽃사과	1주		"		
202	"	"	개암나무	4주		"		
203	"	"	오가피나무	30주		"		

일련 번호	소재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204	367-6	건 물	슬래트/벽돌	31.5	주거용	박 완 서 박 찬 은	강동구 천호동 363-32	477- 7295
205	"	"	"	43.4	"	"		
206	"	수 목	목련	2주		김 기 재	동대문구 장안동360-1 삼보선경연립 A-101	
207	"	"	느티나무	3주		"		
208	고덕동 367-6	수 목	살구나무 밤나무 향나무	3주 (각 1주)		김 기 재	동대문구 장안동360-1 삼보선경연립 A-101	
209	386	수 목	은행나무	2,300주		김 휴 태	강남구 논현동 13-13	
210	"	"	단풍나무	180주				
211	"	"	수양버들	5주				
212	"	"	미루나무	1주				
213	379-1	"	두충나무	1주		김 영 완	강동구 고덕2동 275-6	
214	379-2	"	오가피나무	30주		어 수 안	강동구 하일동 352-19	
215	"	"	두충나무	2주				
216	379-6	"	측벽나무	1주		한 규 남	강동구 고덕동 374-4	
217	377	"	두충나무	300주		유 창 선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10-1504	
218	75-1	"	대추나무	25주		김 홍 섭	강동구 고덕동 653-1	
219	"	"	버드나무	5주		"	"	
220	하일동 153	수 목	수양버들	40주		김 기 율	강동구 하일동 153-2	
221	144-2	"	대추나무	100주		이 중 원	강동구 하일동 145-2	
222	고덕동 386	관 정	모터펌프	1식		홍 천 균	송파구 풍납2동 159-15	
223	"	"	"	"		"	"	
224	387	"	"	"		"	"	
225	379-2	"	"	"		어 수 안	강동구 하일동 352-19	
226	380	"	"	"		심 태 섭	강동구 천호3동 212-26	
227	"	"	"	"		"	"	
228	"	"	"	"		"	"	
229	"	"	"	"		"	"	
230	381	"	"	"		"	"	
231	380	"	"	"		김 영 완	강동구 고덕2동 275-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지적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32	고덕동 379-1	관정	모터펌프	1식		김영완	강동구 고덕2동 275-6	
233	375	"	"	"		"	"	
234	377	"	"	"		서천석	강동구 고덕동 377	
235	374-1	"	"	"		박홍수	중랑구 중화1동 450	
236	"	"	"	"		"	"	
237	372-6	"	"	"		조관수	강동구 고덕1동 633-4	
238	"	"	"	"		"	"	
239	680	"	"	"		이경하	강동구 고덕1동 638-2	
240	371-1	"	"	"		한희영	강동구 천호4동 539-19	
241	369-1	"	"	"		"	"	
242	고덕동 369-1	관정	모터펌프	1식		한희영	강동구 천호동 539-19	
243	77-1	"	"	"		이명식	강동구 천호동 291-37	
244	75-3	"	"	"		김홍섭	강동구 고덕1동 653-1	
245	680	"	"	"		"	"	
246	76-1	"	"	"		김영생	강동구 고덕2동 72	
247	80-1	"	"	"		변영찬	강동구 고덕2동 72	
248	"	"	"	"		"	"	
249	65	"	"	"		"	"	
250	"	"	"	"		"	"	
251	"	"	"	"		"	"	
252	680	"	"	"		민병주	강동구 고덕2동 79-2	
253	하일동155-1	관정	모터펌프	1식		이충사	하남시 풍산동 360-10	
254	고덕동 372-6	트랙터		1식		조관수	강동구 고덕1동 633-4	
255	"	경운기		1식		"	"	
256	"	자동분무기		1식		"	"	
257	380	트랙터		1식		심태섭	강동구 천호동 121-26	
258	75-1	자동분무기		1식		김홍섭	강동구 고덕동 653-1	
259	"	자재적재	보온덮개	1톤		"	"	
260	"	"	파이프	1톤		"	"	
261	"	노지재배		1,320	호박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 류)	지 적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262	73-1	경운기		1식		강 기 섭	강동구 고덕동 80-13	
263	고덕동 73-1	관 정	모타펌프	1식		강 기 섭	강동구 고덕동 80-13	
264	"	자재적재	파이프	1톤		"	"	
265	"	노지재배		1,749	고추	"	"	
266	"	수 목	대추나무	6주		"	"	
267	"	"	버드나무	6주		"	"	
268	"	"	벗나무	40주		"	"	
269	"	"	향나무	22주		"	"	
270	"	"	뽕나무	6주		"	"	
271	"	"	참나무	1주		"	"	
272	"	"	대추나무	2주		문 용 기	강동구 하일355-24	
273	"	"	뽕나무	2주		"	"	
274	고덕동 73-1	노지재배		2,310	콩	문 용 기	강동구 하일355-24	
275	65	경운기		1식		변 영 찬	강동구 고덕동 72	
276	"	관리기		1식		"	"	
277	"	온풍기		1식		"	"	
278	"	보일러		1식		"	"	
279	"	트랙터		1식		"	"	
280	"	자재적재	보온덮개 외 3종	2톤		"	"	
281	"	수 목	버드나무	25주		"	"	
282	"	"	대추나무	600주		"	"	
283	"	"	포도나무	1,500주		"	"	
284	66-1	"	동백나무	42주		이 인 수	명일동LG(아) 102-413	
285	고덕동 66-1	수 목	꽃사과	1주		이 인 수	명일동LG(아) 102-413	
286	374-1	자동분무기		1식		박 홍 수	중랑구 중화동 450	
287	379-6	경운기		1식		김 영 완	강동구 고덕동 275-6	
288	"	관리기		1식		"	"	
289	"	자동분무기		1식		"	"	
290	387	경운기		1식		홍 천 균	송파구 풍납동 159-15	
291	"	농약기계		1식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지적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92	372-3	노지재매		471.2	갓	조관수	강동구 고덕동 633-4	
293	"	노지재매		188.6	"	"	"	
294	379-6	분묘	4 x 4	1기		한규남	강동구 고덕동 374-4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9-420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

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체에 대하여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같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 면허번호 : 제2057호
- 업체명 : 신한전기
- 대표자 : 이신희
- 소재지 :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19 (917호)
- 위반내용 : 면허기준미달(소재불명)
- 행정처분 : 면허취소

- 면허번호 : 382호
- 업체명 : 이석전력
- 대표자 : 광재용
- 소재지 : 성동구 송정동 79-2
- 위반내용 : 면허기준미달(소재불명)

○ 행정처분 : 면허취소

●서울특별시공고제1999-421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

전기공사업법 제30조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체는 제2종전기공사업 면허가 실효되었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 면허번호 : 제246호
- 업체명 : 대성전기
- 대표자 : 임재용
- 면허실효일자 : '99. 5. 18.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66-1
- 비고 : 자진반납

●서울특별시공고제1999-432호

시의회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장

구분	부의안건명	주관부서
조례안 (24건)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실)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시정개혁단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 관 부 서
조 례 안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 (회 계 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 (재산관리과)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복지국 (의 약 과)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 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문화관광국 (문 화 과)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국 (관 광 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 설 국 (도로운영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 설 국 (건설행정과)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건 설 국 (치 수 과)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및주택개발사업 구역내환지지시측량대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주 택 국 (도시정비과)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복지국 (의 약 과)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 관 부 서
조 례 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건설국 (건설행정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국 (도시정비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국 (건축지도과)
의견청취안 (5건)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 수색~화전간 복선 전철화사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 ·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 도로 및 광장 확장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 서부면허시험장~가양대교북단 연결도로간 도로신설 · 성산로~증산로간 도로확장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 변경결정 · 강서구 공항로주변 일대(발산역~공항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 강북구 변동 122번지 일대	
<p>●서울특별시공고제1999-435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기 같은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9. 5. 25 서울특별시장</p> <p>○ 신고인 - 상호(등록번호) : 주식회사 케이코몰 (제121호) - 소재지 : 강남구 대치동 960-5 티아빌딩 3층 - 대표자 : 최혜숙</p> <p>○ 변경내용 - 변경전 · 상호 : 주식회사 생활속의네트워크 ·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747-24 · 전화번호 : 558-8012~4 - 변경후 · 상호 : 주식회사 케이코몰 · 소재지 : 강남구 대치동 960-5 티아빌딩 3층 · 전화번호 : 556-6603~4</p> <p>●서울특별시공고제1999-442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주)중앙일보에서 제출한 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p>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99-4호
2. 모집자 : 주식회사 중앙일보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번지
4. 대표자
 - 성명 : 홍석현
 - 생년월일 : 1949. 10. 20.
5. 허가내용
 - 모집지역 : 전국일원
 - 모집금액 : 5억원이하
 - 모집기간 : 허가일 ~ 1999. 8. 31.
 - 모집목적 : 코소보 난민 돕기
 - 모집방법 : 은행 온라인 계좌입금(중앙일보를 통한 홍보)
 - 금품종류 : 현금 및 의료품
 -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 모금비용 : 없음

입 법 예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9-424호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과(전화 : 3707-9715

(3) 임원 및 이사회 관련규정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이사회 정수	7인	11인 이내
감사의 임기·임명방법	2년, 社長이 임명	3년, 市長이 임명

~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

가.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99. 4. 1 시행)에 따라 정관변경방법 등을 개정된 공기업법 취지에 맞도록 변경하고,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장추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사장임명방법 변경

- 현행 :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
- 개정 :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2) 사장추천위원회

가) 구성 : 시장 추천 2인,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2인, 공사이사회 추천 2인, 공사의 감사 1인(7인으로 구성)

나) 회의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사장 후보의 추천

- 1)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
- 2)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요구,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재심의하여 후보 추천

구 분	현 행	개 정
상임이사의 정수	제한없음	50/100 미만
당연직 비상임이사	교통기획관, 재정기획관	교통관리실장, 시정기획관
위촉직 비상임이사	없음	신설
<p>(4) 정관변경방법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시장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 ○ 개정 : 시장의 인가 <p>(5)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변경</p> <p>가) 이사회 의결로 확정 후 시장에 보고</p> <p>나) 시장은 보고된 사업계획·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p> <p>다) 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함.</p> <p>※ 현행 : 시장의 승인</p> <p>(6) 시장 승인사항 추가</p> <p>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p> <p>나)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p> <p>(7) 사장과의 계약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이 임명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공사는 사장과 계약을 체결 <p>(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조항 명기</p> <p>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p> <p>나) 공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의 일부를 제3에게 위탁 가능</p> <p>다) 비용부담은 지방공기업시행령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p> <p>(9) 공사의 시 재산 무상사용 조항 삭제</p> <p>(10)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p> <p>다. 의견제출</p> <p>(1)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99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p> <p>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p> <p>●서울특별시공고제1999-433호</p> <p>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9. 5. 25 서울특별시</p> <p>1. 개정취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징물 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중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p> <p>2. 주요내용 가. 상징물 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제2항) ○ (현행) :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개정) :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 나. 사용료 면제대상중 추상적 규정 삭제(현행 제8조제4항제4호 삭제)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p> <p>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 731-61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p> <p>●서울특별시공고제1999-438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9. 5. 25 서울특별시</p>	<p>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p> <p>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항목중 국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삭제함. 나. 기금의 용도중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공급시설 교체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 다. 용자대상자중 “수요자”는 실제 서울시에서는 지원실적이 없고, 자치구의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삭제함.</p> <p>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9. 6.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산업정책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2) 3707-9317~8, FAX 3707-932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 100-74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p> <p>●서울특별시공고제1999-439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안)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	---

1999. 5. 25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용자대상자중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가스공급시설을 교체하는 자”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안전관리에 기여

나. 용자대상자가 기금을 용자받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분기별로 공사계획 및 기금용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업자가 실제 필요시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을 삭제한다. 기금을 용자받은 대상자가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및 금융기관장에게 이를 각각 통보하도록 한 것을 사업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시장”은 삭제하고 “금융기관장”에게만 통보하고 “금융기관장은 시장에게 통보”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9. 6. 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산업정책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2) 3707-9317~8, FAX 3707-932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 100-74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서울특별시공고제1999-441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개정(안)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

1. 개정취지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가 개정되어 동조례에서 폐지한 입원보증인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반환자에 대한 보증인은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다. 를 폐지
- 무료환자의 진료기간을 폐지하고, 환자 치료 상태에 따라 병원장이 정하도록 함.
-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의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707-9131-2)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서울특별시공고제1999-444호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p>같이 입법예고합니다.</p> <p>2. 이 입법예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광과(☎ 3707-94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9. 5. 25 서울특별시장</p> <p>가. 개정이유 2000년 ASEM 등 연이은 국제행사를 대비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폭넓은 자문을 받음으로서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 현행 20인인 위원수를 25인으로 보강</p> <p>다.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는 199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장(참조: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p>●서울특별시공고제1999-445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조례(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입법예고에 관하여 문의가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건설국 하수계획과(☎ 3707-9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right;">1999. 5. 25 서울특별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시설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하수처리시설 ○중량하수처리시설, 탄천하수처리시설, 가양하수처리시설, 난지하수처리시설 나.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 1) 수탁대상기관 :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2) 위탁기간 :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3) 운영지원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비용등을 전부 또는 일부지원 4)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사무수행능력,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5) 위탁사무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하수 및 분뇨의 처리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6) 위탁의 취소 :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 수탁기관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수탁기관이 위·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7) 수탁기관의 의무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대여·매매할 수 없다.
 -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수탁기관이 처리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 8) 지도·감독
 -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처리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권한을 갖는다.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 있으며 그 결과 지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시·명령 등에 따라야 한다.
-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건설국 하수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 3707-99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교육청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1999-53호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교육감

- 1. 개정취지
 -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법률 : '99.1.18, 시행령 '99.5.10) 됨에 따라 변경되는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우리교육청 교육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학습자 보호를 위한 필요 규

<p>제사항을 법제화하여 학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p> <p>2. 주요골자</p> <p>가.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미터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 제한 규정을 폐지함.</p> <p>나. 학원의 부제교습회수를 폐지하고,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변경함.</p> <p>다. 교습소의 부제교습회수를 폐지함.</p> <p>라. 학원등록시 강사 및 생활지도사 명단을 제출토록함.</p> <p>마. 학원등록시 수강료를 제출토록하고, 1년내내 수강료 변경을 금지한 규정을 폐지함.</p> <p>바.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법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교습소설립·운영을 금지토록 함.</p> <p>사.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재학생의 보통교과목(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외국어회화 제외)으로 규정함.</p> <p>아.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시행령의 교습과정변경에 따라 조정함.</p> <p>3. 의견제출</p> <p>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교육감(참조: 평생교육체육과장, 전화: 399-9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기타 조례개정에 반영되도록 희망하는 사항</p> <p>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p> <p>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399-9399)</p>	<p>○ 동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2217-7524)</p> <p>○ 서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363-2589)</p> <p>○ 남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633-8084)</p> <p>○ 북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990-0757)</p> <p>○ 중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763-1873)</p> <p>○ 강동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419-5546)</p> <p>○ 강서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699-3626)</p> <p>○ 강남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546-5815)</p> <p>○ 동작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814-9143)</p> <p>○ 성동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2281-2892)</p> <p>○ 성북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 982-9476)</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구 고 시</p> </div> <p>●성북구고시제1999-57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제211호('77. 7. 7), 서울특별시고시제451호('78. 9. 4),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제99-51호('99. 5. 4)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결정, 정정고시된 사항으로,</p> <p>2.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99-51호('99. 5. 4)로 면적 정정고시 하였으나 일부토지누락으로 단순면적 정정 및 동덕여대 주변 도로는 서울특별시고시제181호('79. 5. 4),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90. 10. 31),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제7호('91. 3. 27), 서울특별</p>
---	--

시성북구고시제96-44호('96. 5. 1)로 결정 및 변경결정 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에서 도로 저축부분이 해제되지 않아 이를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3.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3(경미한 도시계획의변경)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9. 5. 25
성 북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 구분 : 변경
- 시설명 : 학교
- 시설의 세분 : 대학교(동덕여대)
- 위치 : 성북구 상월곡동 86-12일대
- 면적(㎡)
 - 당초 : 46,674
 - 변경 : 46,500
- 비고
 - 면적정정 : 증108㎡ 도로저축 부분 해제 : 감282㎡

나.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면과 같음.

●노원구고시제1999-3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노원구고시 제1997-4('97. 1. 29)호로 인가고시되고, 노원구고시 제1999-26('99. 4. 29)호로 변경인가고시된 중계동 ~ 하계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동법시행령제26조, 제27조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교통국 토목과(☎ 950-3405~8) 및 건설관리과(☎ 950-340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9. 5. 25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변동사항 없음.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라.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사업명 : 중계동 ~ 하계동간 도로개설공사

물 건 조 서
“변동사항 없음”

토 지 조 서

연번	기 정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의권리 및 내용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연번 1 ~ 50 변동사항없음																	

연번	기 정								변 경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의 권리 및 내용 종류	성명	주소	소유권이의 권리 및 내용 종류		
51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최관식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김영문									
									김정길									
									유순우									
									최용주									
									전병중									
									박정자									
									장석훈	충북은행	청주시 영동 86-3	근저당설정						
									방병출	변동사항 없음								

●노원구고시제1999-3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노원구 공고 1999-183('99.4.29)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된 상계시장앞 도로확장공사의 2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에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을

가. 사업개요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 (☎ 950-3405~7), 건설관리과 (☎ 950-3400~2), 주택과 (☎ 950-3380~3)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9. 5. 25

노 원 구 청 장

사업 위치	사업종류 도로종류 및 명칭	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 일자	지적고시 일자	시행청
상계동 107-1008~72-8 (상계시장앞)	· 도시계획시설(도로) · 상계3동 107-1008~72-8 도로확장공사(일반도로)	B=20M L=340M	'99.1~ '99.12.31	'97.12.13 (서고제404호)	'97.12.26 (노고제84호)	노원구청
상계동 71-181~241	· 도시계획시설(도로) · 상계4동 71-181~241 도로개설공사(일반도로)	B=6M L=50M	'99.1~ '99.12.31	'97.12.13 (서고제404호)	'97.12.26 (노고제84호)	노원구청
상계동 65번지일대	· 도시계획시설(도로) · 상계3동65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일반도로)	B=6M L=350M	'99.1~ '99.12.31	'97.12.13 (서고제404호)	'97.12.26 (노고제84호)	노원구청

나.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다.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의 3호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라. 법8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물 건 조 서

○공사명 : 상계3동 107-1008~72~8간 도로확장공사(상계시장앞)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의 종류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	68-56	부속건물	천막	6.3	오형복	노원구 상계동 68-56				무허가
2	68-56	건물	세멘조	24.9	오형복	노원구 상계동 68-56				기존무허가
3	68-56	부속건물	스레트/샷시	0.6	오형복	노원구 상계동 68-56				무허가
4	68-56	부속건물	천막/샷시	12.0	양영숙	노원구 상계동 72-119				무허가
5	76-35	가건물	스레트/목재	5.0	권상덕	노원구 상계동 76-35				무허가
6	76-35	건물	세멘조	27.8	권상덕	노원구 상계동 76-35				기존무허가
7	76-35	부속건물	스레트/블럭	3.0	권상덕	노원구 상계동 76-35				기존무허가
8	75-2	건물	세멘조	26.7	이공신	노원구 상계동 75-2				기존무허가
9	75-2	가건물	천막	0.7	이공신	노원구 상계동 75-2				무허가
10	75-14	부속건물	스레트/블럭	12.9	허옥순 홍갑용	노원구 상계동 75-14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공릉동지점)	가압류	홍갑용
11	75-14	건물	철콘/벽돌조 스라브	42.7	허옥순 홍갑용	노원구 상계동 75-14	쌍용자동차 (주)	중구 저동 2가 24-1	"	허옥순
12	75-14	부속건물	스레트/블럭	13.7	허옥순 홍갑용	노원구 상계동 75-14				
13	75-7	건물	복조	16.4	이경화	노원구 상계동 75-7				기존무허가
14	75-7	건물	복조	19.4	정남순	노원구 상계동 112-64				기존무허가
15	75-7	부속건물	복조	12.2	이경화	노원구 상계동 75-7				기존무허가
16	75번지	부속건물	복조	10.5	이경화	노원구 상계동 75-7				기존무허가
17	75-8	건물	세멘조	55.3	박세환	노원구 상계동 107-1000				기존무허가
18	75-8	가건물	천막	2.0	박세환	노원구 상계동 107-1000				무허가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의 종류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9	75-8	가건물	스레트/ 샷시	2.9	박세환	노원구 상계동 107-1000				무허가
20	75-12	건물	세멘조	26.6	김옥자	노원구 상계동 75-12				기존무허가
21	75-12	부속건물	벽돌	3.9	김옥자	노원구 상계동 75-12				무허가
22	75-12	가건물	샷시	2.2	김옥자	노원구 상계동 75-12				무허가
23	76-10	건물	철콘/ 평스라브	7.8	전영애	강남구 논현동 244-12	정영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41-93	전세권 설정	
24	110-8	건물	철콘/ 평옥개	42.5	홍안운수 대표조성봉	노원구 상계동 110-8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서울 중구 을지로12가 101-1	근저당 설정	
25	110-37	건물	세멘조	9.6	국일환	노원구 상계동 110-37				기존무허가
26	107-381	가건물	천막	0.9	이기복	노원구 상계동 107-381				무허가
27	107-381	가건물	천막	3.5	이기복	노원구 상계동 107-381				무허가
28	107-381	건물	세멘조	3.9	이기복	노원구 상계동 107-381				기존무허가
29	107-380	부속건물	스레트/ 블럭	12.4	안상호	노원구 상계동 107-380				기존무허가
30	107-380	건물	세멘조	12.6	안상호	노원구 상계동 107-380				기존무허가
31	107-348	장독대	블럭	2.9	황연수	노원구 상계동 107-348				기존무허가
32	107-348	건물	세멘조	23.7	황연수	노원구 상계동 107-348				기존무허가
33	107-348	화장실	블럭	2.7	황연수	노원구 상계동 107-348				기존무허가
34	107-347	건물	세멘조	32.8	김복예	노원구 상계동 107-347				기존무허가
35	77-48	건물	철콘/벽돌 스라브	29.9	우제민	노원구 상계동 172 대림A 103동 1301호				
36	77-48	가건물	목재	7.2	우제민	노원구 상계동 172 대림A 103동 1301호				
37	77-47	건물	철콘/ 스라브	24.8	박대혁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A 54동 405호	노원구청	노원구 상계동 701-1 217-83-00445	전세권 설정	
38	77-20	건물	세멘조	22.7	이대운	노원구 상계동 107-990				기존무허가
39	77-52	부속건물	블럭	9.7	조광섭	노원구 상계동 111-543				기존무허가
40	77-52	건물	세멘조	27.3	조광섭	노원구 상계동 111-543				기존무허가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의 종류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41	76-11	화장실	스레트/ 블럭	0.3	최동식	노원구 상계동 76-11				기존무허가
42	76-11	건물	세멘조	10.6	최동식	노원구 상계동 76-11				기존무허가
43	76-4	지하계단	철콘	1.0	김재동	노원구 상계동 76-4				
44	76-4	건물	철콘/ 스라브	7.4	김재동	노원구 상계동 76-4				
45	110-9	유수분리 조	철콘	1.4* 3.2* 4.0	안수영	노원구 중계동 580 성원 (A) 101-702 (939-1555)				지하구조물
46	110-9	유수분리 조	철콘	1.4* 3.2* 4.0	안수영	노원구 중계동 580 성원 (A) 101-702				지하구조물

○ 공사명 : 상계3동 65주변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의 종류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	109번지	화장실	스레트/ 블럭	2.2	백중식	노원구 상계동 2-21				기존무허가
2	109번지	건물	벽돌조	33.3	백중식	노원구 상계동 2-21				기존무허가
3	109번지	부속건물	스레트/ 블럭	8.2	백중식	노원구 상계동 2-21				기존무허가
4	109번지	장독대	블럭	2.6	백중식	노원구 상계동 2-21				기존무허가
5	109-7 (72-195)	건물	스레트/ 블럭	32.2	미상		노원구청	'94년제2차 항측에 의거 신발생무허가 건물로 적출보고	철거예정 건물	무허가
6	109-33	장독대	스레트/ 블럭	1.2	전정자	노원구 상계동 109-33				
7	109-35	건물	연와조 세멘트조	7.6	이창은	노원구 상계동 109-56	(주) 한미은행	서울시 중구 다동 39 (역곡지점)	근저당 설정	
8	109-35	부속건물	스레트/ 블럭	12.3	이창은	노원구 상계동 109-56				
9	109-64	화장실	스레트/ 블럭	1.6	미상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의 종류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0	109-28	부속건물	스레트/ 블럭	7.1	조성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380 신명진달래A 210동 415호				
11	109-28	건물	벽돌조 세멘트조	15.4	조성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380 신명진달래A 210동 415호				
12	109-13	건물	벽돌조/ 세멘트조	14.4	최순복	노원구 상계동 107-13				
13	109-5	장독대	블럭	4.9	정태영	노원구 상계동 107-123				
14	109-5	건물	연와조/ 세멘트조	15.3	정태영	노원구 상계동 107-123				
15	110-55	화장실	블럭	2.6	박용희	노원구 상계동 110-12				
16	110-55	건물	연와조/ 세멘트조	42.4	박용희	노원구 상계동 110-12				
17	110-55	부속건물	블럭	0.1	박용희	노원구 상계동 110-12				
18	110-33	부속건물	블럭	3.9	이해수	성북구 성북1동 110-3				
19	110-33	장독대	블럭	2.8	이해수	성북구 성북1동 110-3				
20	110-33	건물	벽돌조/ 시멘트조	21.7	이해수	성북구 성북1동 110-3				
21	110-12	장독대	블럭	4.1	백재원	노원구 상계동 109-656	중소기업은행 (상계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설정	
22	110-12	창고	목재	4.4	백재원	노원구 상계동 109-656	임성순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9-49	근저당 설정	
23	110-12	창고	목재	2.2	백재원	노원구 상계동 109-656				
24	110-12	건물	벽돌조 세멘트조	36.0	백재원	노원구 상계동 109-656				
25	110-12	장독대	스레트/ 블럭	3.9	이춘화	노원구 상계동 110-12호 (936-2788)				준공미필 건축물
26	110-12	건물	연와조 시멘트조	13.6	이춘화	노원구 상계동 110-12호				준공미필 건축물
27	110-12	건물	연와조 시멘트조	5.2	이춘화	노원구 상계동 110-12호				준공미필 건축물
28	110-12	화장실	블럭	1.6	이춘화	노원구 상계동 110-12호				준공미필 건축물
29	65-14	건물	세멘조	0.6	이수무	수원시 장안구 율정동 65-33 (0331-297-2975)				기존무허가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의 종류	수량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30	65-14 (109번지)	장독대	블럭	1.8	장주달	노원구 상계동 65-149				기존무허가
31	65-14 (109번지)	창고	스레트/ 블럭	0.7	장주달	노원구 상계동 65-149				기존무허가
32	65-14 (109번지)	건물	세멘조	4.5	장주달	노원구 상계동 65-149				기존무허가
33	110-27	건물	벽돌조/ 세멘트조	11.7	문재석	노원구 상계동 110-27	(주)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장안동지점)		
34	110-11	창고	목재	2.2	임의정	포천군 내촌면 수암리 380번지				
35	110-11	건물	연와조/ 세멘트조	64.2	임의정	포천군 내촌면 수암리 380번지				
36	101-150	화장실	블럭	2.0	채현주	서초구 방배동 827-17 한성주택 비동 402호				
37	101-150	건물	연와조/ 세멘트조	0.2	채현주	서초구 방배동 827-17 한성주택 비동 402호				
○ 공사명 : 상계4동 71-181~241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의 종 류	수량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	71-246	창고	목재	1.5	정병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2-6 한신(A) 101동 903호				기존무허가
2	71-246	건물	세멘조	6.4	정병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2-6 한신(A) 101동 903호				기존무허가
3	산161번지	부속건물	스레트/ 블럭	15.7	신택균 (사망)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윤자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택균의 여	기존무허가
4	산161번지	가건물	샷시	9.5	신택균 (사망)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윤자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택균의 여	기존무허가
5	산161번지	건물	세멘조	4.8	신택균 (사망)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윤자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택균의 여	기존무허가
6	산161번지	건물	세멘조	0.3	신택균 (사망)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윤자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택균의 여	기존무허가
7	산161번지	가건물	샷시	4.4	신택균 (사망)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윤자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택균의 여	기존무허가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의 종 류	수량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8	산161번지	건물	세멘조	8.4	신택균 (사망)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윤자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택균의 여	기존무허가
9	산161번지	부속건물	스레이트/ 블럭	6.9	신택균 (사망)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윤자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택균의 여	기존무허가
10	산161번지	화장실	스레이트/ 블럭	4.0	신택균 (사망)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윤자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택균의 여	기존무허가
11	산161번지	부속건물	스레이트	19.8	신택균 (사망)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윤자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신택균의 여	기존무허가
12	71-246	건물	세멘조	5.6	임창조	노원구 상계동 71-246				기존무허가
13	68-2	부속건물	스레이트	8.9	신우교통 (주)	노원구 상계동 68-2 대표 조성봉(936-6000)				

●구로구고시제1999-3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추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50조,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1996-59호('96.8.9)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제3조에 의거 민영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1999. 5. 25

구 로 구 청 장

1. 사업명 : 개봉아파트재건축조합사업
2. 사업주체 주소 및 성명
 - 구로구 개봉동 368-17호 개봉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박형욱외948인
 - 광진구 구의동 546-1 한진건설(주) 대표 안 용
3. 사업시행지의위치 및 면적규모
 - 사업위치 : 구로구 개봉동 362-1, 362-2, 369번지
 - 대지면적 : 38,908.45㎡
 - 연면적 : 182,995.0㎡
 - 사업규모 : 9~24층 아파트 13개동 1,3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1996년 8월 ~ 1999년 10월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추가)
 - 구분 : 신설
 - 규모
 - 등급 : 소로
 - 류별 : 2
 - 폭원(m) : 8
 - 기능 : 국지도로
 - 연장(m) : 40
 - 기점 : 개봉3동 367-34
 - 종점 : 개봉3동 496-79
 - 사용형태 : 일반도로

●구로구고시제1999-3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341호('78.7.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제440호('78.8.14)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1995-67('95.10.16)호로 정정 지적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1998-103('98.4.15)호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시

<p>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9. 5. 25 구로구청장</p>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98의81 ~ 98의99</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 도시계획사업 (도로) · 명칭 : 고척1동 고척초교주변 도로개설공사 <p>다. 사업규모 : B=8m, L=45m</p> <p>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구로구 구로동 435번지 · 성명 : 구로구청장 <p>마. 사업시행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2년</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물건조서</p>
--	---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m ²)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1	고척1동 98-105	화장실 담 장 정화조	스레트 /브릭 식 식	1 1 1		이호식	고척동 98-105			

<p>●관악구고시제1999-2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1. 관악구 봉천5동 1699번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제33조제11항, 동법시행령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주택과(☎ 880-3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9. 5. 25 관악구청장</p> <p>1. 사업명 : 동양연립재건축 2. 사업주체 및 주소 : 동양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 안병열)</p>	<p>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5동 1699번지</p> <p>3. 사업시행위치 및 규모</p> <p>가. 위치 : 관악구 봉천5동 1699번지</p> <p>나. 대지면적 : 5,592.82㎡</p> <p>다. 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p> <p>라. 규모 : 지하3층, 지상19층, 아파트1개동, 203세대</p> <p>마. 연면적 : 31,026.465㎡</p> <p>4. 사업기간 : 1999. 11. ~ 2002. 11.</p> <p>5. 승인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규모 : 3/19 1개동 203세대 ○대지면적 (m²) : 5,592.82 ○건축면적 (m²) : 1,563.569 ○연면적 (m²) : 31,026.465
--	---

○ 건폐율(%) : 27.96
 ○ 용적율(%) : 366.96
 6. 의제처리사항 :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4항 각호의 허가. 인가. 결정 또는 신고사항

●관악구고시제1999-25호
 신림5동제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관리처분(환지예정지지정)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2호('96. 8. 21) 지구지정, 관악구고시 제1997-108호('98. 1. 10) 개선계획 및 관리처분(환지예정지지정)인가된 신림제5-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측량에 의한 단순면적 정정내용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

2. 조치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변경하고 같은법 제6조제5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주택과 (☎ 880-3380~3)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9. 5. 25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명 : 신림5동 제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 사업시행기간 : '97. 12. 29 ~ '99. 12. 31
 다.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관악구 신림5동 1448-30일원, 5,759.6㎡
 라. 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마. 관리처분 변경(환지예정지 변경)내용

구분	지구면적		환 지 예 정 지 지 정							
			분양지		환지		공공시설		청산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징수	교부
당초	29	5,773.76	22	4,447.06	1	93.2	6	1,233.5		
변경	27	5,759.6	22	4,443.7	1	93.2	4	1,222.7	2.66	28.12

※ 택지 및 도로의 선형 변경없는 단순 면적변경.
 바. 관련도서 : 생략(관악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서초구고시제1999-2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의변경인가

1.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1999-128('99. 3. 30)호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1999-21('99. 5. 4)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염곡마을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하며,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토목과(☎ 02-570-405~9) 및 건설관리과(☎ 02-570-6400)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9. 5. 25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 염곡마을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의 시행지 : 서초구 염곡동 100-11 ~ 염곡동 155-2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114m
 라. 사업의 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간
 마.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염곡동 100-11외 5건)
 사. 토지 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서울특별시외 5건)

토 지 조 서 (변 경)

연번	소재지 지 번	면 적(㎡)		지목	실제 이용 상황	당 초				변 경							
		공 부	편 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내 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내 용		
1	염곡동 100-11	13,786	265	도로	도로	서울특별시											
2	염곡동 39-4	369	218	도로	도로	서초구											
3	염곡동 154	7	7	도로	도로	강은득	서초구 염곡동 154-1			강은채	서초구 염곡동 154-1	이경애	동대문구용두2동 238-22	가압류			
												오필근	강서구방화동 542-3 예원연립311	가압류			
												이병숙	서초구 잠원동 55-7, 601호	가압류			
												김어진	강남구도곡동 527 도곡(아)54-204호	가압류			
4	염곡동 151-3	173	173	도로	도로	이상봉	중구 신당동 248-25			이상봉	서초구 잠원동70 한신4차(아)202-104						
5	염곡동 155	37	37	도로	도로	이상봉	중구 신당동 248-25			이상봉	서초구 잠원동70 한신4차(아)202-104						
6	염곡동 155-2	51	51	도로	도로	이상봉	중구 신당동 248-25			이상봉	서초구 잠원동70 한신4차(아)202-104						

●강남구고시제1999-2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변경처리하였기 같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허가구분 : '99-신-4
- 점용위치 : 세곡동 7-1외 2개소
- 허가면적 : 27㎡
- 점용기간 : '99. 5. 20 ~ 5. 30(10일간)
-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관 변설 원상복구
- 점용료 : 감면(서울시 하천점용징수조례 제3조)

○ 수허가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88-5, 한국수자원공사 성남권관리단

구 공 고

●용산구공고제1999-145호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등록을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9. 5. 25

용 산 구 청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기계설비, 용산 99-12-11
- 상호 : 해양 엔지니어링
- 대표자 : 강영진
- 소재지 : 청파2가 103-3
- 전화번호 : 717-6301
- 등기(주민) 번호 : 490108-1*****
- 시공능력 공시금액 : 739,870천원

●동대문구공고제1999-173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정비)실시계획공람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제1999-11호('99. 4. 2)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답십리동 320-11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정비)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제2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저축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920-4395) 및 건설

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고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9. 5. 25

동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320-11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정비)
 - 명칭 : 마을마당 체육시설 조성
- 다. 사업의 규모 : 조성면적 172㎡
-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년월일 : 인가일 ~ 2000.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따로붙임
- 사.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의 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 아. 도시계획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성북구공고제1999-380호

건축허가및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 변경인가를위한서류공람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공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사업의 종류 :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도시계획사업(학교)
2.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3-1 외 19필지

3. 사업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회신청(증축)내용	비 고
대지면적	46,674.0m ²	46,440.15m ²	-233.85m ²	건축선후퇴
건축면적	15,953.14m ²	16,434.22m ²	481.08m ²	면적증가
연 면 적	58,337.04m ²	60,428.01m ²	2,090.97m ²	면적증가
동 수	15동	15동	0동	변동없음
건 폐 율	34.35%	35.38%	1.03%	건폐율증가
용 적 율	115.46%	119.10%	3.64%	용적율증가
용 도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음악관동	다목적실 및 강의실 증설

4. 시행자

- 주소 : 성북구 하월곡동 23-1
- 성명 :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의견 제출방법 : 서면

7.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8. 열람도서 및 제출기관 : 성북구청 2층 건축과(☎ 920-3390~4 담당자 : 진조평)

●노원구공고제1999-20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

1. 아래와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14일간 공람합니다.
2. 본사업에 대한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하수과(☎ 950-3415~8) 및 건설관리과(☎ 950-3400~2)에 의견제출 및 문

의바랍니다.

1999. 5. 25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장소 : 노원구청 하수과 및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 1999. 5. 20. ~ 1999. 6. 2.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시행내용

- 사업위치 : 월계동 916-1 ~ 912-9
- 사업내용, 도로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반도로, 월계동 914번지 주변 하수관 신설공사
- 규모 : B=4m, L=63m
- 사업기간 : 1999. 5 ~ 1999. 12. 31
- 결정고시일자 : 노고 19호('99. 4. 9)
- 지적고시일자 : 노고 19호('99. 4. 9)
-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라. 사업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월계동 916-2	전	223	223	이인규 이미현 김영희	서울 종로구 홍파동 12-1 서울 종로구 홍파동 12-1 서울 종로구 홍파동 12-1
2	월계동 915-29	전	15	15	이이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66-75
3	월계동 915-28	전	12	12	김기완	서울 은평구 신사동 15-1

●마포구공고제1999-154호

건설업양도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9. 5. 25

마 포 구 청 장

- 양도인가일 : 1999. 5. 19.
-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 토공사업, 마포98-02-16
 -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마포97-10-8
- 양도자
 - 상호 : 창덕건설
 - 소재지 : 마포구 도화동 51-1
 - 대표자 : 배기순
- 양수자
 - 상호 : 길동산업(주)
 - 소재지 : 마포구 도화동 51-1
 - 대표자 : 배기순

●강서구공고제1999-129호

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서 구 청 장

- 상호(대표자) : (주)리빙플러스건설 (송호규)
- 업종 및 면허번호
 - 철근콘크리트, 부산92-10-39
 - 도장공사업, 서울94-05-18
- 소재지 : 강서구 화곡동 1105-5
- 처분내용 : 등록말소

- 처분일 : '99. 5. 19.
- 사유 : 등록기준(출자좌수) 미달로 영업 정지처분후 출자좌수 미확보
- 근거 : 법제83조제2호
- 상호(대표자) : 대화설비(주), (윤영근)
- 업종(면허번호) : 기계설비공사업(서울 12-210)
- 소재지 : 강서구 등촌동 649-13
- 처분내용 : 등록말소
- 처분일 : '99. 5. 19.
- 사유
 - 등록기준(출자좌수) 미달
 - 소재불명
- 근거 : 법제83조 제2호, 제8호
- 상호(대표자) : 프린스공영(주) (조국행)
- 업종(면허번호) : 미장방수공사업(95-서울-03-16)
- 소재지 : 강서구 등촌동 526-6
- 처분내용 : 등록말소
- 처분일 : '99. 5. 19.
- 사유 : 등록기준(출자좌수) 미달로 영업 정지처분후 출자좌수 미확보
- 근거 : 법제83조 제2호

●서초구공고제1999-19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영업정지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를 영업정지처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서 초 구 청 장

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영업정지기간
		----- 별		첨-----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영업정지처분업체 현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관련법)	영업정지기간
1	서초구-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9	문화종합건설(주)	최양규	양재동 16-3 (3층)	기술자 미보유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1항 4호)	'99. 5. 10 ~ 11. 9
2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2	광운건설(주)	백명자	서초동1543-9(4층)	"	"
3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4	(주) 파스텔씨엠	김기태	방배동 6-9(3층)	"	"
4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8	두진종합건설(주)	김창곤 유종규	서초3동 1465-10	"	"
5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9	상부종합건설(주)	석두성	서 초 3 동 1703-10(10층)	"	"
6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24	대업종합건설(주)	유명종	방배동 1001-29 (2층)	"	"
7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25	한국자원건설(주)	안경중	방배동 450-2	"	"
8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27	동아종합환경(주)	정성규	서초3동 1577-4	"	"
9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32	(주)쌍녕건설	김영환	서초동 1584-5 (4층)	"	"
10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40	(주)청동주택	권준상	방배동 450-17	"	"
11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42	신광토건(주)	홍순우 이하영	양재동 1-26	"	"
12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44	신일건설	김성수	서초2동 1364-29	"	"
13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47	(주)우신공영	김대재	서초2동 1427-5 (2층)	"	"
14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50	(주)중부주택	이은재	서초2동 1361-9 (502호)	"	"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관련법)	영업정지기간
15	서초구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51	이천건설(주)	홍순달	양재1동 15-25	기술자 미보유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1항 4호)	'99. 5. 10 ~ 11. 9
16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52	삼옥종합건설(주)	윤진구	서초3동 1539-6, 7 (경흥빌딩 2, 3층)	"	"
17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55	중흥건설(주)	이용달	서초3동 1541-32 (2층)	"	"
18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57	백승탑종합건설(주)	김현민	서초3동 1583-8 (7층)	"	"
19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59	정연주택	김정식	반포1동 738-9	"	"
20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60	(주) 금강산건설	노영수	서초3동 1538-8	"	"
21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62	(주) 경성	이재학	서초3동 1536-7 (3층)	"	"
22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65	정건설(주)	노상기	서초3동 1597-3	"	"
23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71	케이에이취 에이두보(주)	김영구	서초3동 1577-7	"	"
24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73	서연건설(주)	이도섭	서초3동 1515-1	"	"
25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79	(주) 대보컨설팅	김동수	서초3동 1554-1 (2층)	"	"
26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80	다이나믹산업 개발(주)	김명자	서초2동 1358-6 (11층)	"	"
27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83	(주) 대협월드프라자	김효창	서초4동 1316-1 (2층)	"	"
28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87	주민건설(주)	차귀호	서초3동 1595-2 (센츄리204호)	"	"
29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88	(주) 기인건설	최규병	양재2동 275-1	"	"
30	서초구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91	(주) 고도씨앤디	김태선	반포4동 53-5 (501호)	"	"
31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92	(주) 옥탑	김경찬	양재2동 277-1 (3층)	"	"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관련법)	영업정지기간
32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95	문화종합건설(주)	최양규	양재1동 16-3	기술자 미보유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1항 4호)	'99. 5. 10 ~ 11. 9
33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99	시대산업	정순환외 2인	잠원동 15-5	"	"
34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02	(주) 씨앤아이건설	서종문	방배동 2283(3층)	"	"
35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03	경무종합건설(주)	강갑용	잠원동 38-25(2층)	"	"
36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04	(주) 기림기업	이유형외 1인	서초2동 1339-2 (2층)	"	"
37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07	문화도시개발(주)	배충남	양재2동 262-2	"	"
38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10	(주) 정예종합건설	정행규 한진수	반포4동 535-5 (5층)	"	"
39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16	상릉종합건설(주)	임동환	서초2동 1360 (2층)	"	"
40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19	(주) 정현건설	정동현	방배4동 810-3 (203호)	"	"
41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20	동일주택	고재일	잠원동 19-10	"	"
42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21	신건축종합건설(주)	전기효	양재1동 16-13 (2층)	"	"
43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22	(주) 유니언주택	정태선	양재2동 275-1 (삼호1101호)	"	"
44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32	(주) 화인토탈건설	정문현	서초3동 1505-10 (2층)	"	"
45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33	뉴현대건설	안행순	반포1동 703-2 (302호)	"	"
46	서초구-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134	(주) 신하주택	류지혁	서초3동 1569-15 (4층)	"	"
47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36	준하개발(주)	배동준	반포동 706-1 (205호)	"	"
48	서초구-주택건설 사업자-143	일보건설(주)	이학규	양재동 1-26 (401호)	"	"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관련법)	영업정지기간
49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145	무궁화종합건설(주)	한기화	서초동 1623-1 (301호)	"	"
50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147	(주)상록수건설	이주찬	서초4동 1688-3 (8층)	"	"
51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150	(주)서련	김성용	서초3동 1539-6 (2층)	"	"
52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153	(주)보성씨앤디	박태성	서초4동 1692-5 (6층)	"	"
53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154	(주)화진인터내셔널	이규준 김철운	서초동 1316-17 (7층)	"	"
54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158	(주)세향건설	권은진	잠원동 14-17 (5층)	"	"
55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160	(주)아이에프건설	임성백	양재동 113	"	"
56	서초구 주택건설 사업자-164	한샘주택건설(주)	이강석	서초4동 1694-6 (3층)	"	"

●강남구공고제1999-304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인가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인가일자 : 1999. 5. 17.
-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 의장공사업(91-서울-01-57)
- 양도자
 - 상호 : (주)종합건축사무소 민우(110111-0759568)
 -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732-21
 - 대표자 : 민병욱
- 양수자
 - 상호 : (주)화성건설(134111-0051122)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 591-8
- 대표자 : 이인성

●강남구공고제1999-314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인가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양도 인가일 : 1999. 5. 20.
- 업종 및 등록번호
 - 의장, 94-서울-01-149
 - 토공, 98-강남-02-9
 - 철콘, 94-서울-10-354

- 구분 : 양도자
 - 대표자 : 오탈주
 - 상호, 법인(사업자) 번호 : 아록건설(주) (110111-1062324)
 - 영업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131-11호
- 구분 : 양수자
 - 대표자 : 오탈주
 - 상호, 법인(사업자) 번호 : (주)유한토건 (110111-1657935)
 - 영업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131-11호

●강남구공고제1999-302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시설물유지관리업, 강남99-29-24
- 상호 : 수암산업개발(주)
- 대표자 : 문광호
- 소재지 : 포이동 229-5
- 등록일 : 1999. 5. 17.

●강남구공고제1999-305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중공사업, 강남-99-17-3
- 상호 : (주) 씨엔티서브 씨테크놀로지 (110111-1648934)
- 대표자 : 이정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

- 16 성지2차1005호
- 등록일 : 1999. 5. 17.

●강남구공고제1999-306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상·하수도, 강남99-13-33
 - 포장, 강남99-16-09
- 상호 : 미화산업주식회사
- 대표자 : 한영환, 이경철
- 소재지 : 역삼동 705-15
- 등록일 : 1999. 5. 18.
- 업종 및 등록번호 : 미장·방수, 강남 99-03-16
- 상호 : 주식회사 리뉴시스템
- 대표자 : 이종용
- 소재지 : 역삼동 668-1
- 등록일 : 1999. 5. 18.

●강남구공고제1999-308호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의장, 강남99-01-48
 - 토공, 강남99-02-47
 - 미장방수, 강남99-03-17
 - 철콘, 강남99-10-59
- 상호 : 흥안건설(주), (110111-1683906), T. 549-9672~5

- 대표자 : 김길동, T.549-9672~5
- 소재지 : 강남구 청담동 56-3
- 등록일자 : 1999. 5. 19.
- 업종 및 등록번호 : 의장, 강남99-01-49
- 상호 : (주)아트인 (110111-0667125), T.544-6511
- 대표자 : 문웅곤, T.544-6511
- 소재지 : 강남구 청담동 57-2
- 등록일자 : 1999. 5. 19.

●강남구공고제1999-309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비계구조물해체, 강남99-07-19
- 상호 : 일승산전(주)
- 대표자 : 권오중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122-3호
- 발급일자 : 1999. 5. 18.
- 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 강남99-02-45
 - 비계구조물해체, 강남99-07-18
- 상호 : (주)울목건설
- 대표자 : 장수년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242-31호
- 발급일자 : 1999. 5. 18.

●강남구공고제1999-310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 강남99-02-46
 - 철콘, 강남99-10-58
 - 상하수도, 강남99-13-32
- 상호 : 모간건설(주)
- 대표자 : 원정운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254-17호
- 발급일자 : 1999. 5. 18.
- 업종 및 등록번호 : 의장, 강남99-01-47
- 상호 : (주)디오티
- 대표자 : 마창복
- 소재지 : 강남구 신사동 592-11호
- 발급일자 : 1999. 5. 18.

●강남구공고제1999-311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처리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업종 및 면허번호 : 토공공사업, 강남-99-02-48
- 상호 : 은성건기(주)
- 대표자 : 김현수
- 소재지 : 강남구 신사동 577
- 발급일자 : 1999. 5. 19.

●강남구공고제1999-313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구 청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의장, 강남99-01-50
- 상호 : 인월드 디자인그룹(주)
- 대표자 : 정현미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227-4호
- 발급일자 : 1999. 5. 20.

●**송파구공고제1999-197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양도인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송 파 구 청 장

- ◎ 양도인가 년월일 : 1999년 5월 14일
- ◎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등록번호 : 의장공사업 (96-서울-01-70)
- ◎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 양도자
 - 상호 : 케이와이건설(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9
 - 대표자 : 김양배
 - 양수자
 - 상호 : 한도산업(주)
 - 소재지 :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선동리 363-1
 - 대표자 : 김재규

●**송파구공고제1999-199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발급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송 파 구 청 장

- 등록일자 : 1999. 5. 14.
- 업종 및 등록번호

- 건축물조립, 송파-99-20-03
- 창호, 송파-99-08-05
- 업체명 : (주)스틸콘
- 대표자 : 정지호
- 소재지 : 송파구 송파동 29 부영빌딩 502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1517973
- 등록일자 : 1999. 5. 14.
- 업종 및 등록번호
 - 창호, 송파-99-08-06
 - 철콘, 송파-99-10-59
- 업체명 : 한석종합건설(주)
- 대표자 : 한동석
- 소재지 : 송파구 송파동 11-1(202)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1490848
- 등록일자 : 1999. 5. 14.
- 업종 및 등록번호 : 기계설비, 송파-99-12-08
- 업체명 : (주)정보엠에스
- 대표자 : 박세원
- 소재지 : 송파구 문정동 25-4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1676216

●**송파구공고제1999-203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발급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송 파 구 청 장

- 등록일자 : 1999. 5. 17.
- 업종 및 등록번호 : 창호, 송파-99-08-07
- 업체명 : (주)그라스텍
- 대표자 : 정요성
- 소재지 : 송파구 문정동 105-9 순빌딩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1483273

●송파구공고제1999-206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발급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송 파 구 청 장

- 등록일자 : 1999. 5. 19.
- 업종 및 등록번호 : 도장, 송파-99-05-7
- 업체명 : 상영엔지니어링 (주)
- 대표자 : 나정민
- 소재지 : 송파구 석촌동 235-5
- 법인 (주민) 등록번호 : 110111-0862379
- 등록일자 : 1999. 5. 19.
- 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 송파-99-02-58
 - 상하수도설비, 송파-99-13-21
- 업체명 : 도신토건 (주)
- 대표자 : 김돈석
- 소재지 : 송파구 가락동 70-1
- 법인 (주민) 등록번호 : 110111-0792526
- 등록일자 : 1999. 5. 19.
- 업종 및 등록번호
 - 창호, 송파-99-08-08
 - 철물, 송파-99-11-10
- 업체명 : (주) 금화산업
- 대표자 : 김학재
- 소재지 : 송파구 석촌동 226-16
- 법인 (주민) 등록번호 : 110111-1686512
- 등록일자 : 1999. 5. 19.
- 업종 및 등록번호 : 미장방수, 송파-99-03-14
- 업체명 : 현준건설 (주)
- 대표자 : 박남호
- 소재지 : 송파구 석촌동 184-8
- 법인 (주민) 등록번호 : 110111-1687362

●강동구공고제1999-121호

전문건설업등록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항 사유로 인한 건설업등록을 자진반납이 있어 취소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동 구 청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사업, 강동-97-02-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동-97-10-5
- 상호 : 민보건설 (주)
- 대표자 : 홍재희
- 소재지 : 강동구 암사2동 520-19
- 사유 : 자진반납
- 행정처분내역 : 99. 5. 18 등록취소
- 처분일자 : 99. 5. 18.

●강동구공고제1999-122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양도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7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동 구 청 장

- 인가일 : '99. 5. 19
- 업종 및 등록번호 : 기계설비공사업, 인천94-12-31
- 구분 : 양도자
 - 대표자 : 두병길
 - 상호 : 동양열기 (주)
 - 소재지 : 강동구 성내동 438-11
- 구분 : 양수자
 - 대표자 : 김기영
 - 상호 : 동양에너지건설 (주)
 - 소재지 : 송파구 가락본동 91-14
 - 시공능력평가액 : 2,720,576천원

사 업 소 공 고

●강동소방서공고제1999-2호

소방시설공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
소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하였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동 소 방 서 장

- 신청일자(계약일자) : '99. 5. 12. ('99. 5. 11.)
-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면허일자) : 전
문소방시설공사업, 제97-195호(97. 12. 29)
- 양수자
 - 상호 : (주)현대전설
 - 영업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길동 247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김봉용
(360928-1*****)
- 양도자
 - 상호 : 강동에너지
 - 영업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길동 247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김겸선
(600622-1*****)

●송파소방서공고제1999-7호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
사업 면허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 같은
법시행규칙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9. 5. 25
송 파 소 방 서 장

- 면허번호 : 서울송파 제99-3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근우엔지니어링(주)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이근배
(610227-1*****)

- 영업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99-9
- 면허일자 : '99. 5. 18.

●양천소방서공고제1999-3호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을 면허하였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
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1999. 5. 25
양 천 소 방 서 장

- 면허번호 : 서울양천 제1999-2호
- 업종(등급 및 분야) : 일반소방시설공
사업(전기분야)
- 상호(영업소 소재지) : 동양네트워크(주)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15-30)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김중열
(560119-1*****)
- 자본금 : 62,876,075
- 면허일자 : '99. 5. 18.

●서초소방서공고제1999-17호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
사업 면허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 같은
법시행규칙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9. 5. 25
송 파 소 방 서 장

- 면허번호 : 서울서초 제99-5호
- 업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상호 : 제일일렉콤(주)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이영만
(520328-1*****)
- 영업소재지 : 서초구 양재동 95-9층승
빌딩2층
- 면허일자 : '99. 5. 20.

●강남소방서공고제1999-17호

소방시설의공사면허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면허의 면허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소 방 서 장

- 면허번호 : 서울강남 제99-8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광련설비 (주)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홍승복 (510912-1*****)
- 영업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196-6
- 면허일자 : '99. 5. 17.
- 면허번호 : 서울강남 제99-9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동화시스템개발 (주)
- 대표자 : 이경숙 (580219-2*****)
- 영업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124-39
- 면허일자 : '99. 5. 17.
- 면허번호 : 서울강남 제99-10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진원기공 (주)
- 대표자 : 홍영성 (520804-1*****)
- 영업소재지 : 강남구 삼성동 78-3
- 면허일자 : '99. 5. 17.

●강남소방서공고제1999-18호

소방시설의공사면허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면허의 면허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강 남 소 방 서 장

- 면허번호 : 서울강남 제99-11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세진건설산업 (주)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우정훈 (520223-1*****)
- 영업소재지 : 강남구 일원동 689
- 면허일자 : '99. 5. 19.
- 면허번호 : 서울강남 제99-12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지현기술 (주)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김문식 (540124-1*****)
- 영업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238-13
- 면허일자 : '99. 5. 19.

●중부소방서공고제1999-7호

소방시설의설계업등록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5. 25

중 부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99-1호
- 업종 (등급 및 분야) : 소방시설설계업 (2급전기)
- 상호 : (주)기술사사무소 금풍엔지니어링
- 대표자 : 이규복 (520628-1*****)
- 소재지 : 동대문구 신설동 104-28
- 등록일자 : '99. 5. 18.

인 사 발 령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취소

- 발령 제223호 (1999. 5. 18자)
-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최기철 (750420-1*****) 지방공무원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5월1일자 신규임용 (발령번호 187호)을 동일자로 취소함.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박태영(720602-1*****) 지방공무원법 제 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5월1일자 신규임용(발령번호 187호)을 동일자로 취소함.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우대원(730804-1*****) 지방공무원법 제 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5월1일자 신규임용(발령번호 187호)을 동일자로 취소함.

서울특별시

행정7급 공무원 면직

○발령 제224호(1999. 5. 18자)

산업경제국실업자대책반 지방행정주사보 최배진(690206-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6급 공무원 파견근무(연장)

○발령 제225호(1999. 5. 18자)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주사 김수빈(560115-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1999. 5. 19 ~ 2000. 5. 20)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주사 최정규(471123-1*****)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파견근무를 명함. (1999. 5. 28 ~ 2000. 5. 27)

서울특별시

별정직 공무원 전보

○발령 제226호(1999. 5. 19자)

보도담당관 지방별정7급상당(영화기사) 김영수(550216-1*****) 시의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입찰공고

●건설안전관리본부공고제1999-17호
용역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행주대교 남단 접속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과업 설명

- 일시 및 장소 : '99. 6. 1. 14:00, 본부 토목부설계실

○입찰참가 신청

- 마감·장소 : '99. 6. 5. 13:00, 총무부 경리과

○입찰

- 일시·장소 : '99. 6. 7. 15:00, 본부 입찰실

2. 입찰참가 자격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 교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수자원개발, 철도분야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도로 및 공항, 교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수자원개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②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마친 업체

3.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용역과업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4. 본용역의 추정가격은 ₩120,000,000원(V.A.T포함)이며, 복수예비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수예비가격

- ①119,866,560원 ②119,640,300원
- ③119,611,200원 ④119,410,440원
- ⑤119,188,800원 ⑥119,176,980원
- ⑦118,943,520원 ⑧118,752,960원

- ⑨118, 736, 340원 ⑩118, 529, 160원
- ⑪118, 287, 360원 ⑫118, 272, 120원
- ⑬118, 143, 600원 ⑭117, 895, 080원
- ⑮117, 787, 668원

5.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본 입찰에 대하여 우편 및 상시입찰을 함께하며 입찰시간전까지 도착된 우편입찰서와 상시 입찰함에 투찰된 상시입찰서에 한하여 유효처리됩니다.
상시입찰기간은 용역과업설명일로부터 입찰시간 전까지입니다.
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될 수 있는 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장에서 즉시 추첨하고, 추첨에 참석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대신 추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9.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입니다.
10. 입찰방법 : 총액입찰
11. 기타사항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경리과에, 과업지시서, 설계서는 토목부설계실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기타 상세한 것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토목부설계실 (☎ 02) 3708-2441) 또는 경리과 (☎ 02) 3708-232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 우편번호 및 주소 : 100-250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1999. 5. 25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분임경리관

●강동구공고제1999-54호

공사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관내불량맨홀정비 및 인상공사(연간단가계약)
 - 입찰등록 마감일시 : 1999-06-05 (13:00)
 - 입찰일시 : 1999-06-07 (10:00)
 - 입찰장소 : 재무과 입찰실
 - 현장설명장소 : 설계도서로 같음
2. 복수예비가격
 - ① ₩323, 341, 480 ② ₩323, 185, 770
 - ③ ₩323, 173, 120 ④ ₩322, 975, 120
 - ⑤ ₩322, 213, 700 ⑥ ₩321, 797, 100
 - ⑦ ₩321, 738, 090 ⑧ ₩321, 688, 730
 - ⑨ ₩320, 576, 330 ⑩ ₩319, 866, 620
 - ⑪ ₩319, 436, 370 ⑫ ₩319, 189, 130
 - ⑬ ₩319, 024, 780 ⑭ ₩318, 868, 260
 - ⑮ ₩318, 845, 680
3. 입찰참가자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건교부 지정 신기술 제15호(S.S맨홀보수공법) 또는 제135호(MK맨홀보수공법) 신기술개발자 및 신기술개발자와 기술 협력을 맺은 업체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기한내 입찰등록을 마친자.
4. 입찰보증금과 구금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3조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전까지 납부해야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치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p>6. 낙찰자 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 예정가격의 90%이상 입찰자중 최저가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90%이상 입찰자가 없을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치되, 전원 현장 입찰일 경우는 즉시 재입찰할 수 있고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이상일 때는 즉시 추첨결정하며 만약 동일가 입찰자 중 참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대신 추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수예비가격4개를 추첨하여 평균산출한 금액 및 동금액의 90%산출시 1원미만은 절상합니다. <p>7. 계약조건</p> <p>공사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설계서등은 재무과에 비치하고 공람에 응하고 있습니다.</p> <p>8. 공사기간 및 현장설명</p> <p>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9. 12. 31까지이며, 현장설명은 설계도서로 같음합니다.</p> <p>9.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공사의 총금액은 325, 021, 820원(추정가격 295, 474, 390원, 부가가치세29, 547, 430원)입니다. ○상시입찰과 우편입찰을 병행하며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구 재무과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우리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시입찰서는 입찰개시전까지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투입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에 필 	<p>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사항은 재무과(☎ 480-1665) 및 발주부서인 하수과(☎ 480-1415)로 문의바라며, 입찰결과 및 낙찰통보는 전화사서함(전화 : 152, 번호2340)으로 안내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9. 5. 25 강 동 구 경 리 관</p> <p>●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공고 제1999-6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철도역사내편의시설임대모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시설 모집 대상역 : 23개역 (5호선 15역, 7호선 3역, 8호선 5역) 2. 임대종목 및 수량 : 역별 세부내역은 우리공사에서 배부하는 안내책자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분 : 수량 - 계 : 32 - 신문 : 11 - 복권 : 8 - 매점 : 3 - 자유업종 : 2 - 음료수 : 5 3. 임대료 및 추첨보증금 : 우리공사에서 배부하는 안내책자 참조 4. 계약기간 : 8호선 암사구간 개통일로부터 3년, 단, 5호선 종로3가, 을지4가, 동대문운동장, 군자역 신문판매대는 ‘2000. 1. 1부터 8호선 암사구간 계약종료일까지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 중 만20세 이상인자로 “서울시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우선 사업 대
--	--

<p>상자중 우리공사 영업관리규정 제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p> <p>6. 신청방법 : 역별, 종목별 1인 1종목 신청 (2개소 이상 신청시 접수무효)</p> <p>7. 신청시 구비서류(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p> <p>가. 임대신청서 및 서약서 각1부(공사서식)</p> <p>나. 주민등록 등본 1부</p> <p>다. 추첨보증금 납입 영수증</p> <p>라. 우선사업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각1부(장애인증명서, 모자가 정증명서, 거택보호증명서, 순국선열 유족증명서)</p> <p>8. 신청서 배부일시 및 장소 : '99. 6. 4. 09:00 ~ 6. 10. 16:30 공사 정.후문 경비실</p> <p>9. 신청서 접수일시 및 장소</p> <p>○구분 : 접수일자</p> <p>- 1순위자 : '99. 6. 8. 09:00 ~ 16:30</p> <p>- 2순위자 : '99. 6. 9. 09:00 ~ 16:30</p> <p>- 3순위자 : '99. 6. 10. 09:00 ~ 16:30</p> <p>- 접수장소 : 공사 1층 현관</p> <p>※ 역별, 종목별 선순위자 마감시는 차순위자 접수하지 않습니다.</p> <p>10. 당첨자 발표 : '99. 6. 16. 경향신문 및 공사 개시판 공고</p> <p>11. 기타사항</p> <p>가. 신문, 매점, 복권, 자유업종 판매대는 공사에서 제공하며, 음료수자동판매기는 임차인 부담으로 설치(전기, 수도배관공사 포함)</p> <p>나. 공사에서 배부하는 안내책자를 완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p> <p>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영업처 사업팀(☎ 6211-2164~7)으로 문의 바람.</p> <p>위와같이 도시철도공사 역사내 편의시설물 임대모집을 공고함.</p>	<p>※ 찾아오는길 : 5호선 답십리역 하차 5번 출구 방면(직선거리 7분)</p> <p>1999. 5. 2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p> <p>●강서교육청공고제1999-10호 입찰</p> <p>1. 입찰에 부치는 사항</p> <p>가. 건명 : 도서 구매</p> <p>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p> <p>다. 납품장소 : 당청이 지정하는 강서교육청 관내 학교</p> <p>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간</p> <p>마. 도서목록열람 및 설명 : '99. 5. 28 ~ 6. 7 당청 재무과(1층)</p> <p>바.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99. 6. 7. 18:00 당청 재무과(1층)</p> <p>사. 입찰일시 및 장소 : '99. 6. 8 14:00 당청 재무과(1층)</p> <p>2. 입찰참가자격</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p> <p>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p> <p>가. 입찰보증금납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규정에 의합니다.</p> <p>나.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p> <p>4. 입찰방법 : 상시투찰 또는 우편입찰(우편입찰의 경우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교육청에 도착된 것에 한합니다.)</p> <p>5. 낙찰자 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에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p>
--	--

- 6.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에 의함)
- 7.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8. 기타
 -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품 설명사항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나. 물품은 우리교육청이 지정하는 학교에 납품하고 해당학교 물품출납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대가 청구 및 지급은 지정학교별로 합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재무과 (☎ 695-8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9. 5. 25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경리관

기 타

●서대문구공고제1999-156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시범가로설계
현상공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보행권이 보장되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시범가로 설계를 현상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5. 25
서대문구청장

- 1. 사업명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시범가로 설계 현상공모

- 2. 사업개요
 - 가. 위치 : 서대문구 창천동 명물거리
 - 나. 연장 : 신촌현대백화점 ~ 명물거리 ~ 신촌기차역~미라보호텔(L=1000m)
 - 다. 현상설계공모목적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이 걷고싶어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설계(안) 수립
 - 라. 현상설계공모내용 : 시범가로 설계계획도서, 용역수행계획서
- 3. 참가업체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도로, 교통, 조경분야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상기 4개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를 보유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자.
- 4. 현상공모 방법 : 일반공개공모
 - 가. 신청 및 접수기간
 - 현장설명일 : 1999. 5. 25. (14:00)
 - 공모신청서 교부 : 1999. 5. 21 ~ 1999. 5. 28 (7일간)
 - 공모신청서 접수 : 1999. 5. 29 ~ 1999. 6. 5 (7일간)
 - 작품접수 : 1999. 6. 26 ~ 1999. 7. 3 (7일간)
 - ※ 공휴일은 제외, 작품접수는 공모신청자에 한함.
 - 나. 현장설명장소, 공모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 330-1385~7)
- 5. 당선작 선정 및 보상 : 당선작 1점, 가작 1점(당선작 - 설계권 부여, 가작 - 200만원 지급)
- 6. 공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